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을 신설하고, 개인 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강화하며, 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영세 인적용 역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을 상향하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비과세소득 범위를 조정하며, '25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금융투자상품 소득계산방식 등 집행상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적격펀드의 벤처기업등 주식거래·평가손익 비과세 범위 확대 (안 제 26조의2)

적격집합투자기구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간접 취득

한 경우 그 벤처기업 주식 거래·평가손익을 비과세함.

나.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안 제40조의2)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낮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기부금 및 접대비의 명칭 변경(안 제78조 등)

기부금의 명칭을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으로 변경하고,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함

라.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안 제78조의3)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확대하고 미가입시 필요경비를 전액 손금 부인하도록 함

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안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입학전형료를 추가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함

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155조제1항)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합리화(안 제155조의3)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도록 함.

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 연장(안 제167조 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배제하는 기간을 2024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함.

자.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안 제212조의4 신설)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절차 등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차. 지급명세서 제출범위 확대(안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이 면제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에서 식사대 등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안 제216조의3)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대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범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를 추가함

타. '25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개선(안 제26조의2, 제150조의6 부터 제150조의8, 제150조의12, 제150조의13, 제150조의15, 제150조의17부터 제150조의22까지, 제150조의26, 제203조의2, 제203조의4) 집합투자증권, 채권, 상장지수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계산 방법, 원천징수 제도 등을 보완하고 공모 국내주식형펀드 판단기준, 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함.

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안 별표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함.

하. 소비자상대업종 추가(안 별표3의2)

애플런스 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을 소비자상대업종에 추가함

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안 별표3의3)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각호외의 본문중 “요건을 모두”를 “어느 하나의 요건을”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 중 “9억원”을 각각 “12억원”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해외이주”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취득 방법

가.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증권을 취득

나.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증권을 취득(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다.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증권을 취득

2. 취득 대상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 가목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1항 본문 중 “법 제17조제1항제5호 본문”을 “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이익을”을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를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같은항 계산식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 A × B - C

A: 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분배소득금액(이하 “좌당 분배소득금액”이라 한다)

B: 결산·분배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주수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분배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제150조의17 제6항에서 제8항까지 및 제150조의18을 준용한다.

1. 제150조의17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
2. 제150조의17 제3항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50조의17 및 제150조의18에서 같다)에서 매수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연금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0으로 하며, 축소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 (1)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중 어느 한 명이 60세 이상일 것
- (2)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연금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다만, 축소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로서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4) 연금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5)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 금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할 것

⑦ 주택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연금주택 매매계약서 및 축소주택 매매계약서(축소주택을 매입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⑧ 국세청장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2항제1호다목(2) 및 (3)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납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2항제1호다목(2) 및 (3)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납입일로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주택차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아니하며, 연금계좌취급자는 이를 해당 거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그 납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주택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축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입일로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로 보지 아니한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
2.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금액} = A - (B - C) - D$$

A: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잔액

B: 연금주택 양도가액

C: 새로 취득한 주택(여러 번에 걸쳐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각각의 주택)의 취득가액

D: 이미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은 금액의 누적액

⑪ 국세청장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계좌취급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해당 거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 및 제11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주자에 대

하여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1. 주택차액 납입 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해당 공제액(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0으로 한다)
 2. 운용수익에 대해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 상당액(원천징수한 세액이 없는 경우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을 의미한다)
- ⑬ 연금주택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고려하여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5) 및 같은 조 제10항을 적용한다. 이때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5)의 한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 \min(\text{주택차액, 1억원}) \times \text{연금주택 지분비율}$$

제78조제4호, 제81조 제목, 제81조제3항 본문, 제83조 제목, 제83조제3항제1호, 제85조 제목,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4항 및 제181조제1항제4호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7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을 말한다”를 “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 0

제78조의3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나.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제79조제4항 전단 중 “기부금과”를 “특례기부금과”로, “기부금을 구분하여”를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로 한다.

제8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를 “제58조, 제7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정기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 30/100

제81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에 따른 기부금 및”을 “에 따른 특례기부금 및”으로 하며, “정치자금기부금”을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다.

제117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제2항”을 “법 제57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2항 본문을 적용받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은 공제받지 못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sum (A \times B)$$

A: 간접투자회사등의 일별 좌당(또는 주당) 외국납부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의 총 좌수 또는 총 주식 수로 나눈 금액)

B: 해당 시점의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또는 주식수)

② 제1항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하며,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sum \{ (A \times B) \times C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일별 좌당(또는 주당) 외국납부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총 좌수 또는 총 주식 수로 나눈 금액)

B: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해당 시점의 간접투자회사등의 보유 좌수(또는 주식 수)

C: 해당 시점의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또는 주식수)를 해당 시점의 간접투자회사 총 좌수(또는 주식 수)로 나눈 값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50조의17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frac{\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frac{\text{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frac{1}{1}$	$- \frac{\text{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 ⑤ 제4항제1호 산식 중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세율을 말한다(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같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접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사업연도등”이라 한다) 외국납부세액을 직전 사업연도등의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의 당해 소득으로 나눈 값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값에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등의 평균 투자비율을 곱한 값(간접투자회사등이 복수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값)

3. 하나의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법인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각 호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값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및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등에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만 계산한다.

⑦ 간접투자회사등이 이미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서 해당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사업연도등 이후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않고 간접투자회사등이 해당 환급된 외국법인세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제118조의6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제134조제1항 본문 중 “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192조 제1항 단서“로 한다.

제143조제4항제2호 중 “사업자”를 “사업자. 다만 다목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3천6백만원으로 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6의 제목 “(국외금융투자자산으로부터의 금융투자소득 등)”을 “(국외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및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이하 “국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외국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금융투자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은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7의 제목

“(적격집합투자기구 등)”을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8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2의 제목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을 “(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국외금융투자자산”을 “국외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때 국외에 있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118조의4를 준용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3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하며 채권등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0조의15(국외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시 외화환산) 국외금융투자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외화의 원화 환산에 대하여 제178조의5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7제1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A \times B - C$$

A: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B: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 · 주수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 · 수수료,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에 따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7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도하는”을 “매도하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해외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를 “같은 집합투자증권 또는 해외증권시장에서 상장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로 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이 절에서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7제8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좌당양도소득금액 및 좌당분배소득금액”을 “좌당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금액,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0조의17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제150조의17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8제1항제1호 중 “제150조의17제3항제1호”를 “제150조의17제3항제1호 가목(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0조의17제3항제2호 및 제5항제2호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 좌당분배소득금액”을 “제150조의17제3항제1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증

권에 한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pm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과세손익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9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하며 이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해외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상장지수증권”을 “상장지수증권 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0 중 “상장지수증권”을 “상장지수증권(외국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1제1항제5

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2제1항제2호다목3)을 삭제하고, 같은 목에 4), 5) 및 6)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6)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6의 제목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매일 집합투자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투자(이하 “최저투자 의무”라 한다)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투자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에도 3분의 2 이상인 것으로 본다.

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1개월
 나.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종료일 이전 1개월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전 1개월
 라.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최저투자자의무를 위반하게 된 날부터 1개월
 마.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투자자의무를 위반하게 된 날부터 1개월

①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격집합투자기구로 본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이익금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이익금이 0보다 작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2.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3. 집합투자기구이익금과 제1호의 분배금 및 유보금 내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의 평가이익 등 적격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소득 계산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51조제3항 본문 중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를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으로 한다.

제153조제3항제1호 중 “(”를 “(특별자치시와)”로 한다.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에 따라”를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를 “(특별자치시와)”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를 “주택[”로, “주택[”를 “주택(”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55조의3제1항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직

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로,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확인되는”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으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을 “임대를 개시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4호) 중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157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은 이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다목 중 “제4항제1호바목”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

항제1호”로 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158조제4항제2호 중 “현금·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을 “현금·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5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text{취득가액} = A \times \frac{B}{C}$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경우로서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채무액 C: 증여가액

제159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공동상속주택”으로 한다.

제163조의2제3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로 한다.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마.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바.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 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166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라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급하는 주택을”을 “공급한 주택을”로 하고, 같은 목 2) 및 같은 호 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하는”을 각각 “임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의2 중 “2023년 5월 9일”을 “2024년 5월 9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을 “일반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임대주택 등을”을 “임대주택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의무임대기간 등”을 “의무임대기간등”으로 한다..

제167조의4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2023년 5월 9일”을 “2024년 5월 9일”로 한다.

제167조의10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의2 중 “2023년 5월 9일”을 “2024년 5월 9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5.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제167조의11제1항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2023년 5월 9일”을 “2024년 5월 9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제168조의8제2항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로 한다.

제168조의9제2항 중 “(”를 “(특별자치시와”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78조의13제1항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79조의4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다시 적용받고자 할 때, 비거주자의 신청서류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9조의5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9조의5(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119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제17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9조의6(거주자의 국채등에 대한 소득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라,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포함된 거주자는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4조의5제2항제1호 중 “제203조의2제12항”을 “제203조의2제15항”으로 한다.

제1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시 차감되는 간접투자외국법인

인세액으로서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	
율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원천징수세율
외국 원천징수세율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및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등에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만 계산한다.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제6항 전단 중 “적용받으려”를 “금융회사등별로 최초 적용받으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부터 제

14항까지를 각각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 전단에 따른 기본공제적용”을 “제6항부터 제8항에 따른 기본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8항) 중 “제6항 전단”을 “제6항부터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9항) 중 “제6항 전단에 따른 신청 금액”을 “제6항부터 제8항에 따른 신청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중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5항”으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투자소득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중전의 제14항) 중 “제12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기본공제를 최초로 신청한 후 다음 과세기간에 기본공제 금액 및 기본공제를 적용할 금융회사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신청해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7항에 따른 기본공제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기본공제 적용신청 내용을 다음 과세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⑨ 제6항부터 제8항에 따라 기본공제 신청을 한 경우 신청 이후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적용된 기본공제 금액 및 기본공제가 적용된 금융회사등을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본공제 신

청금액이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등에 추가적으로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⑮ 금융회사등은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법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아니한 양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를 원인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에게 해당 소득(한 계좌 내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종목의 금융투자소득 전부를 말한다)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⑳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을 다른 금융회사등의 계좌로 대체 또는 이체하는 금융회사등은 취득가액 등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거래내역을 금융투자상품의 대체 또는 이체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제15항 및 같은조 제16항을 같은조 제18항 및 제19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19항(중전의 제16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제15항”을 “제18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명세서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천징수배제신

청서를 함께”를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관중인 원천징수배제신청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로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208조의2제1항제2호 중 “제61조”를 “제3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11조제3항 중 “제61조”를 “제3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용역”을 “용역(다만 「법인세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와 거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1조의2제2항 중 “1억원”을 “8천만원”으로, “사업자를”을 “사업자(최초로 요건을 충족한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간”을 “의무가 최초로 발생하는 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억원 이상인”을 “최초로 8천만원 이상이 되는”으로,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를 “7월 1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1억원”을 “8천만원”으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을 “경우에는”으로, “과세기간으로 한다”를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한다.

제2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63조의3

제1항의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3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

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⑦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⑧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

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의2호 중 “리목, 버목”을 “버목”으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차액결제거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2025년 1월 1일 전 체결된 제150조의21제1항제5호에 따른 과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

하는 소득으로서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중 2025년 1월 1일 전까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의 수입시기는 제150조의8제5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98조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최초 수입시기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1조제4항(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57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23년 3월 1일
2. 제40조의2, 제211조제4항제3호,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212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3. 제78조제4호, 제78조의3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81조 제목 및 같은 조 제3항(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83조 제목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85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81조제1항제4호, 제213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4.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8제1항, 제150조의20 및 제203조의2 제18항·제19항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7제8항, 제150조의21제1항제5호나목, 제184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03조의2제6항부터 제17항 및 같은

조 제20항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 제150조의6, 제150조의7, 제150조의8, 제150조의12, 제150조의13제1항, 제150조의15, 제150조의17제1항부터 제7항, 제150조의19제4항·제6항, 제150조의22제1항제2호다목, 제150조의26, 제178조의13제1항 및 제203조의4의 개정규정, 제117조의2 및 제189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결산·분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0항후단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의4제1항 후단, 제179조의5 및 제17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계산서의 작성·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전자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11조의2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2021년 12월 31일 이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211조의2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매입자발행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소비자상대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접대비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78조제4호, 제81조 제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83조 제목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85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제6호의 월급여액별·공제대상가족수별 금액을 말한다)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
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
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퍼센트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2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퍼센트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0.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3퍼센트

2.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

가.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나.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 적용사례 >

-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명"의 세액을 적용함.
-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6명"의 세액을 적용함.
-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8명"의 세액을 적용함.

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이상	미만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770	775	-	-	-	-	-	-	-	-	-	-	-
775	780	-	-	-	-	-	-	-	-	-	-	-
780	785	-	-	-	-	-	-	-	-	-	-	-
785	790	-	-	-	-	-	-	-	-	-	-	-
790	795	-	-	-	-	-	-	-	-	-	-	-
795	800	-	-	-	-	-	-	-	-	-	-	-
800	805	-	-	-	-	-	-	-	-	-	-	-
805	810	-	-	-	-	-	-	-	-	-	-	-
810	815	-	-	-	-	-	-	-	-	-	-	-
815	820	-	-	-	-	-	-	-	-	-	-	-
820	825	-	-	-	-	-	-	-	-	-	-	-
825	830	-	-	-	-	-	-	-	-	-	-	-
830	835	-	-	-	-	-	-	-	-	-	-	-
835	840	-	-	-	-	-	-	-	-	-	-	-
840	845	-	-	-	-	-	-	-	-	-	-	-
845	850	-	-	-	-	-	-	-	-	-	-	-
850	855	-	-	-	-	-	-	-	-	-	-	-
855	860	-	-	-	-	-	-	-	-	-	-	-
860	865	-	-	-	-	-	-	-	-	-	-	-
865	870	-	-	-	-	-	-	-	-	-	-	-
870	875	-	-	-	-	-	-	-	-	-	-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875	880	-	-	-	-	-	-	-	-	-	-	-
880	885	-	-	-	-	-	-	-	-	-	-	-
885	890	-	-	-	-	-	-	-	-	-	-	-
890	895	-	-	-	-	-	-	-	-	-	-	-
895	900	-	-	-	-	-	-	-	-	-	-	-
900	905	-	-	-	-	-	-	-	-	-	-	-
905	910	-	-	-	-	-	-	-	-	-	-	-
910	915	-	-	-	-	-	-	-	-	-	-	-
915	920	-	-	-	-	-	-	-	-	-	-	-
920	925	-	-	-	-	-	-	-	-	-	-	-
925	930	-	-	-	-	-	-	-	-	-	-	-
930	935	-	-	-	-	-	-	-	-	-	-	-
935	940	-	-	-	-	-	-	-	-	-	-	-
940	945	-	-	-	-	-	-	-	-	-	-	-
945	950	-	-	-	-	-	-	-	-	-	-	-
950	955	-	-	-	-	-	-	-	-	-	-	-
955	960	-	-	-	-	-	-	-	-	-	-	-
960	965	-	-	-	-	-	-	-	-	-	-	-
965	970	-	-	-	-	-	-	-	-	-	-	-
970	975	-	-	-	-	-	-	-	-	-	-	-
975	980	-	-	-	-	-	-	-	-	-	-	-

- 46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980	985	-	-	-	-	-	-	-	-	-	-	-
985	990	-	-	-	-	-	-	-	-	-	-	-
990	995	-	-	-	-	-	-	-	-	-	-	-
995	1,000	-	-	-	-	-	-	-	-	-	-	-
1,000	1,005	-	-	-	-	-	-	-	-	-	-	-
1,005	1,010	-	-	-	-	-	-	-	-	-	-	-
1,010	1,015	-	-	-	-	-	-	-	-	-	-	-
1,015	1,020	-	-	-	-	-	-	-	-	-	-	-
1,020	1,025	-	-	-	-	-	-	-	-	-	-	-
1,025	1,030	-	-	-	-	-	-	-	-	-	-	-
1,030	1,035	-	-	-	-	-	-	-	-	-	-	-
1,035	1,040	-	-	-	-	-	-	-	-	-	-	-
1,040	1,045	-	-	-	-	-	-	-	-	-	-	-
1,045	1,050	-	-	-	-	-	-	-	-	-	-	-
1,050	1,055	-	-	-	-	-	-	-	-	-	-	-
1,055	1,060	-	-	-	-	-	-	-	-	-	-	-
1,060	1,065	1,040	-	-	-	-	-	-	-	-	-	-
1,065	1,070	1,110	-	-	-	-	-	-	-	-	-	-
1,070	1,075	1,180	-	-	-	-	-	-	-	-	-	-
1,075	1,080	1,250	-	-	-	-	-	-	-	-	-	-
1,080	1,085	1,320	-	-	-	-	-	-	-	-	-	-

- 47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085	1,090	1,390	-	-	-	-	-	-	-	-	-	-
1,090	1,095	1,460	-	-	-	-	-	-	-	-	-	-
1,095	1,100	1,530	-	-	-	-	-	-	-	-	-	-
1,100	1,105	1,600	-	-	-	-	-	-	-	-	-	-
1,105	1,110	1,670	-	-	-	-	-	-	-	-	-	-
1,110	1,115	1,740	-	-	-	-	-	-	-	-	-	-
1,115	1,120	1,810	-	-	-	-	-	-	-	-	-	-
1,120	1,125	1,880	-	-	-	-	-	-	-	-	-	-
1,125	1,130	1,950	-	-	-	-	-	-	-	-	-	-
1,130	1,135	2,020	-	-	-	-	-	-	-	-	-	-
1,135	1,140	2,090	-	-	-	-	-	-	-	-	-	-
1,140	1,145	2,160	-	-	-	-	-	-	-	-	-	-
1,145	1,150	2,230	-	-	-	-	-	-	-	-	-	-
1,150	1,155	2,300	-	-	-	-	-	-	-	-	-	-
1,155	1,160	2,370	-	-	-	-	-	-	-	-	-	-
1,160	1,165	2,440	-	-	-	-	-	-	-	-	-	-
1,165	1,170	2,500	-	-	-	-	-	-	-	-	-	-
1,170	1,175	2,570	-	-	-	-	-	-	-	-	-	-
1,175	1,180	2,640	-	-	-	-	-	-	-	-	-	-
1,180	1,185	2,710	-	-	-	-	-	-	-	-	-	-
1,185	1,190	2,780	-	-	-	-	-	-	-	-	-	-

- 48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190	1,195	2,850	-	-	-	-	-	-	-	-	-	-
1,195	1,200	2,920	-	-	-	-	-	-	-	-	-	-
1,200	1,205	2,990	-	-	-	-	-	-	-	-	-	-
1,205	1,210	3,060	-	-	-	-	-	-	-	-	-	-
1,210	1,215	3,130	-	-	-	-	-	-	-	-	-	-
1,215	1,220	3,200	-	-	-	-	-	-	-	-	-	-
1,220	1,225	3,270	-	-	-	-	-	-	-	-	-	-
1,225	1,230	3,340	-	-	-	-	-	-	-	-	-	-
1,230	1,235	3,410	-	-	-	-	-	-	-	-	-	-
1,235	1,240	3,480	-	-	-	-	-	-	-	-	-	-
1,240	1,245	3,550	-	-	-	-	-	-	-	-	-	-
1,245	1,250	3,620	-	-	-	-	-	-	-	-	-	-
1,250	1,255	3,700	-	-	-	-	-	-	-	-	-	-
1,255	1,260	3,810	-	-	-	-	-	-	-	-	-	-
1,260	1,265	3,910	-	-	-	-	-	-	-	-	-	-
1,265	1,270	4,010	-	-	-	-	-	-	-	-	-	-
1,270	1,275	4,120	-	-	-	-	-	-	-	-	-	-
1,275	1,280	4,220	-	-	-	-	-	-	-	-	-	-
1,280	1,285	4,320	-	-	-	-	-	-	-	-	-	-
1,285	1,290	4,430	-	-	-	-	-	-	-	-	-	-
1,290	1,295	4,530	-	-	-	-	-	-	-	-	-	-

- 49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95	1,300	4,630	-	-	-	-	-	-	-	-	-	-
1,300	1,305	4,740	-	-	-	-	-	-	-	-	-	-
1,305	1,310	4,840	-	-	-	-	-	-	-	-	-	-
1,310	1,315	4,940	-	-	-	-	-	-	-	-	-	-
1,315	1,320	5,050	-	-	-	-	-	-	-	-	-	-
1,320	1,325	5,150	-	-	-	-	-	-	-	-	-	-
1,325	1,330	5,250	-	-	-	-	-	-	-	-	-	-
1,330	1,335	5,360	-	-	-	-	-	-	-	-	-	-
1,335	1,340	5,460	-	-	-	-	-	-	-	-	-	-
1,340	1,345	5,560	1,060	-	-	-	-	-	-	-	-	-
1,345	1,350	5,670	1,170	-	-	-	-	-	-	-	-	-
1,350	1,355	5,770	1,270	-	-	-	-	-	-	-	-	-
1,355	1,360	5,870	1,370	-	-	-	-	-	-	-	-	-
1,360	1,365	5,980	1,480	-	-	-	-	-	-	-	-	-
1,365	1,370	6,080	1,580	-	-	-	-	-	-	-	-	-
1,370	1,375	6,180	1,680	-	-	-	-	-	-	-	-	-
1,375	1,380	6,290	1,790	-	-	-	-	-	-	-	-	-
1,380	1,385	6,390	1,890	-	-	-	-	-	-	-	-	-
1,385	1,390	6,490	1,990	-	-	-	-	-	-	-	-	-
1,390	1,395	6,600	2,100	-	-	-	-	-	-	-	-	-
1,395	1,400	6,700	2,200	-	-	-	-	-	-	-	-	-

- 50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400	1,405	6,800	2,300	-	-	-	-	-	-	-	-	-
1,405	1,410	6,910	2,410	-	-	-	-	-	-	-	-	-
1,410	1,415	7,010	2,510	-	-	-	-	-	-	-	-	-
1,415	1,420	7,110	2,610	-	-	-	-	-	-	-	-	-
1,420	1,425	7,210	2,710	-	-	-	-	-	-	-	-	-
1,425	1,430	7,320	2,820	-	-	-	-	-	-	-	-	-
1,430	1,435	7,420	2,920	-	-	-	-	-	-	-	-	-
1,435	1,440	7,520	3,020	-	-	-	-	-	-	-	-	-
1,440	1,445	7,630	3,130	-	-	-	-	-	-	-	-	-
1,445	1,450	7,730	3,230	-	-	-	-	-	-	-	-	-
1,450	1,455	7,830	3,330	-	-	-	-	-	-	-	-	-
1,455	1,460	7,940	3,440	-	-	-	-	-	-	-	-	-
1,460	1,465	8,040	3,540	-	-	-	-	-	-	-	-	-
1,465	1,470	8,140	3,640	-	-	-	-	-	-	-	-	-
1,470	1,475	8,250	3,750	-	-	-	-	-	-	-	-	-
1,475	1,480	8,350	3,850	-	-	-	-	-	-	-	-	-
1,480	1,485	8,450	3,950	-	-	-	-	-	-	-	-	-
1,485	1,490	8,560	4,060	-	-	-	-	-	-	-	-	-
1,490	1,495	8,660	4,160	-	-	-	-	-	-	-	-	-
1,495	1,500	8,760	4,260	-	-	-	-	-	-	-	-	-
1,500	1,510	8,920	4,420	-	-	-	-	-	-	-	-	-

- 51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510	1,520	9,120	4,620	-	-	-	-	-	-	-	-	-
1,520	1,530	9,330	4,830	-	-	-	-	-	-	-	-	-
1,530	1,540	9,540	5,040	-	-	-	-	-	-	-	-	-
1,540	1,550	9,740	5,240	-	-	-	-	-	-	-	-	-
1,550	1,560	9,950	5,450	-	-	-	-	-	-	-	-	-
1,560	1,570	10,160	5,660	-	-	-	-	-	-	-	-	-
1,570	1,580	10,360	5,860	-	-	-	-	-	-	-	-	-
1,580	1,590	10,570	6,070	-	-	-	-	-	-	-	-	-
1,590	1,600	10,780	6,280	-	-	-	-	-	-	-	-	-
1,600	1,610	10,980	6,480	-	-	-	-	-	-	-	-	-
1,610	1,620	11,190	6,690	-	-	-	-	-	-	-	-	-
1,620	1,630	11,400	6,900	-	-	-	-	-	-	-	-	-
1,630	1,640	11,600	7,100	-	-	-	-	-	-	-	-	-
1,640	1,650	11,810	7,310	-	-	-	-	-	-	-	-	-
1,650	1,660	12,020	7,520	-	-	-	-	-	-	-	-	-
1,660	1,670	12,220	7,720	-	-	-	-	-	-	-	-	-
1,670	1,680	12,430	7,930	-	-	-	-	-	-	-	-	-
1,680	1,690	12,640	8,140	-	-	-	-	-	-	-	-	-
1,690	1,700	12,840	8,340	-	-	-	-	-	-	-	-	-
1,700	1,710	13,050	8,550	-	-	-	-	-	-	-	-	-
1,710	1,720	13,260	8,760	-	-	-	-	-	-	-	-	-

- 52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720	1,730	13,460	8,960	1,040	-	-	-	-	-	-	-	-
1,730	1,740	13,670	9,170	1,240	-	-	-	-	-	-	-	-
1,740	1,750	13,880	9,380	1,440	-	-	-	-	-	-	-	-
1,750	1,760	14,080	9,580	1,640	-	-	-	-	-	-	-	-
1,760	1,770	14,290	9,790	1,830	-	-	-	-	-	-	-	-
1,770	1,780	14,500	10,000	2,030	-	-	-	-	-	-	-	-
1,780	1,790	14,700	10,200	2,230	-	-	-	-	-	-	-	-
1,790	1,800	14,910	10,410	2,430	-	-	-	-	-	-	-	-
1,800	1,810	15,110	10,610	2,630	-	-	-	-	-	-	-	-
1,810	1,820	15,320	10,820	2,830	-	-	-	-	-	-	-	-
1,820	1,830	15,530	11,030	3,020	-	-	-	-	-	-	-	-
1,830	1,840	15,730	11,230	3,220	-	-	-	-	-	-	-	-
1,840	1,850	15,940	11,440	3,420	-	-	-	-	-	-	-	-
1,850	1,860	16,150	11,650	3,620	-	-	-	-	-	-	-	-
1,860	1,870	16,350	11,850	3,820	-	-	-	-	-	-	-	-
1,870	1,880	16,560	12,060	4,020	-	-	-	-	-	-	-	-
1,880	1,890	16,770	12,270	4,220	-	-	-	-	-	-	-	-
1,890	1,900	16,970	12,470	4,410	1,040	-	-	-	-	-	-	-
1,900	1,910	17,180	12,680	4,610	1,240	-	-	-	-	-	-	-
1,910	1,920	17,390	12,890	4,810	1,440	-	-	-	-	-	-	-
1,920	1,930	17,590	13,090	5,010	1,630	-	-	-	-	-	-	-

- 53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930	1,940	17,800	13,300	5,210	1,830	-	-	-	-	-	-	-
1,940	1,950	18,010	13,510	5,410	2,030	-	-	-	-	-	-	-
1,950	1,960	18,210	13,710	5,600	2,230	-	-	-	-	-	-	-
1,960	1,970	18,420	13,920	5,800	2,430	-	-	-	-	-	-	-
1,970	1,980	18,630	14,130	6,000	2,630	-	-	-	-	-	-	-
1,980	1,990	18,880	14,330	6,200	2,820	-	-	-	-	-	-	-
1,990	2,000	19,200	14,540	6,400	3,020	-	-	-	-	-	-	-
2,000	2,010	19,520	14,750	6,600	3,220	-	-	-	-	-	-	-
2,010	2,020	19,850	14,950	6,800	3,420	-	-	-	-	-	-	-
2,020	2,030	20,170	15,160	6,990	3,620	-	-	-	-	-	-	-
2,030	2,040	20,490	15,370	7,190	3,820	-	-	-	-	-	-	-
2,040	2,050	20,810	15,570	7,390	4,020	-	-	-	-	-	-	-
2,050	2,060	21,130	15,780	7,590	4,210	-	-	-	-	-	-	-
2,060	2,070	21,450	15,990	7,790	4,410	1,040	-	-	-	-	-	-
2,070	2,080	21,770	16,190	7,990	4,610	1,240	-	-	-	-	-	-
2,080	2,090	22,090	16,400	8,180	4,810	1,430	-	-	-	-	-	-
2,090	2,100	22,420	16,600	8,380	5,010	1,630	-	-	-	-	-	-
2,100	2,110	22,740	16,810	8,580	5,210	1,830	-	-	-	-	-	-
2,110	2,120	23,060	17,020	8,780	5,400	2,030	-	-	-	-	-	-
2,120	2,130	23,380	17,220	8,980	5,600	2,230	-	-	-	-	-	-
2,130	2,140	23,700	17,430	9,180	5,800	2,430	-	-	-	-	-	-

- 54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2,140	2,150	24,020	17,640	9,380	6,000	2,630	-	-	-	-	-	-
2,150	2,160	24,340	17,840	9,570	6,200	2,820	-	-	-	-	-	-
2,160	2,170	24,660	18,050	9,770	6,400	3,020	-	-	-	-	-	-
2,170	2,180	24,990	18,260	9,970	6,600	3,220	-	-	-	-	-	-
2,180	2,190	25,310	18,460	10,170	6,790	3,420	-	-	-	-	-	-
2,190	2,200	25,630	18,670	10,370	6,990	3,620	-	-	-	-	-	-
2,200	2,210	25,950	18,950	10,570	7,190	3,820	-	-	-	-	-	-
2,210	2,220	26,270	19,270	10,760	7,390	4,010	-	-	-	-	-	-
2,220	2,230	26,590	19,590	10,960	7,590	4,210	-	-	-	-	-	-
2,230	2,240	26,910	19,910	11,160	7,790	4,410	1,040	-	-	-	-	-
2,240	2,250	27,240	20,240	11,360	7,980	4,610	1,230	-	-	-	-	-
2,250	2,260	27,560	20,560	11,560	8,180	4,810	1,430	-	-	-	-	-
2,260	2,270	27,880	20,880	11,760	8,380	5,010	1,630	-	-	-	-	-
2,270	2,280	28,200	21,200	11,960	8,580	5,210	1,830	-	-	-	-	-
2,280	2,290	28,520	21,520	12,150	8,780	5,400	2,030	-	-	-	-	-
2,290	2,300	28,840	21,840	12,350	8,980	5,600	2,230	-	-	-	-	-
2,300	2,310	29,160	22,160	12,550	9,180	5,800	2,430	-	-	-	-	-
2,310	2,320	29,480	22,480	12,750	9,370	6,000	2,620	-	-	-	-	-
2,320	2,330	29,810	22,810	12,950	9,570	6,200	2,820	-	-	-	-	-
2,330	2,340	30,130	23,130	13,150	9,770	6,400	3,020	-	-	-	-	-
2,340	2,350	30,450	23,450	13,340	9,970	6,590	3,220	-	-	-	-	-

- 55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2,350	2,360	30,770	23,770	13,540	10,170	6,790	3,420	-	-	-	-	-
2,360	2,370	31,090	24,090	13,740	10,370	6,990	3,620	-	-	-	-	-
2,370	2,380	31,410	24,410	13,940	10,560	7,190	3,810	-	-	-	-	-
2,380	2,390	31,730	24,730	14,140	10,760	7,390	4,010	-	-	-	-	-
2,390	2,400	32,050	25,050	14,340	10,960	7,590	4,210	-	-	-	-	-
2,400	2,410	32,380	25,380	14,530	11,160	7,780	4,410	1,030	-	-	-	-
2,410	2,420	32,700	25,700	14,730	11,360	7,980	4,610	1,230	-	-	-	-
2,420	2,430	33,020	26,020	14,930	11,560	8,180	4,810	1,430	-	-	-	-
2,430	2,440	33,340	26,340	15,130	11,760	8,380	5,010	1,630	-	-	-	-
2,440	2,450	33,660	26,660	15,330	11,950	8,580	5,200	1,830	-	-	-	-
2,450	2,460	33,980	26,980	15,530	12,150	8,780	5,400	2,030	-	-	-	-
2,460	2,470	34,300	27,300	15,730	12,350	8,980	5,600	2,230	-	-	-	-
2,470	2,480	34,630	27,630	15,920	12,550	9,170	5,800	2,420	-	-	-	-
2,480	2,490	34,950	27,950	16,120	12,750	9,370	6,000	2,620	-	-	-	-
2,490	2,500	35,270	28,270	16,320	12,950	9,570	6,200	2,820	-	-	-	-
2,500	2,510	35,600	28,600	16,530	13,150	9,780	6,400	3,030	-	-	-	-
2,510	2,520	35,940	28,940	16,740	13,360	9,990	6,610	3,240	-	-	-	-
2,520	2,530	36,280	29,280	16,950	13,580	10,200	6,830	3,450	-	-	-	-
2,530	2,540	36,630	29,630	17,160	13,790	10,410	7,040	3,660	-	-	-	-
2,540	2,550	36,970	29,970	17,370	14,000	10,620	7,250	3,870	-	-	-	-
2,550	2,560	37,310	30,310	17,590	14,210	10,840	7,460	4,090	-	-	-	-

- 56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2,560	2,570	37,650	30,650	17,800	14,420	11,050	7,670	4,300	-	-	-	-
2,570	2,580	38,000	31,000	18,010	14,630	11,260	7,880	4,510	1,130	-	-	-
2,580	2,590	38,340	31,340	18,220	14,850	11,470	8,100	4,720	1,350	-	-	-
2,590	2,600	38,830	31,680	18,430	15,060	11,680	8,310	4,930	1,560	-	-	-
2,600	2,610	39,690	32,020	18,650	15,270	11,900	8,520	5,150	1,770	-	-	-
2,610	2,620	40,540	32,360	18,920	15,480	12,110	8,730	5,360	1,980	-	-	-
2,620	2,630	41,400	32,710	19,250	15,690	12,320	8,940	5,570	2,190	-	-	-
2,630	2,640	42,260	33,050	19,580	15,910	12,530	9,160	5,780	2,410	-	-	-
2,640	2,650	43,110	33,390	19,910	16,120	12,740	9,370	5,990	2,620	-	-	-
2,650	2,660	43,970	33,730	20,240	16,330	12,960	9,580	6,210	2,830	-	-	-
2,660	2,670	44,820	34,080	20,570	16,540	13,170	9,790	6,420	3,040	-	-	-
2,670	2,680	45,680	34,420	20,900	16,750	13,380	10,000	6,630	3,250	-	-	-
2,680	2,690	46,540	34,760	21,230	16,970	13,590	10,220	6,840	3,470	-	-	-
2,690	2,700	47,390	35,100	21,560	17,180	13,800	10,430	7,050	3,680	-	-	-
2,700	2,710	48,250	35,450	21,890	17,390	14,020	10,640	7,270	3,890	-	-	-
2,710	2,720	49,100	35,790	22,220	17,600	14,230	10,850	7,480	4,100	-	-	-
2,720	2,730	49,960	36,130	22,550	17,810	14,440	11,060	7,690	4,310	-	-	-
2,730	2,740	50,810	36,470	22,880	18,030	14,650	11,280	7,900	4,530	1,150	-	-
2,740	2,750	51,670	36,810	23,210	18,240	14,860	11,490	8,110	4,740	1,360	-	-
2,750	2,760	52,530	37,160	23,540	18,450	15,070	11,700	8,320	4,950	1,570	-	-
2,760	2,770	53,380	37,500	23,870	18,660	15,290	11,910	8,540	5,160	1,790	-	-

- 57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2,770	2,780	54,240	37,840	24,200	18,950	15,500	12,120	8,750	5,370	2,000	-	-
2,780	2,790	55,090	38,180	24,520	19,270	15,710	12,340	8,960	5,590	2,210	-	-
2,790	2,800	55,950	38,530	24,850	19,600	15,920	12,550	9,170	5,800	2,420	-	-
2,800	2,810	56,800	39,300	25,180	19,930	16,130	12,760	9,380	6,010	2,630	-	-
2,810	2,820	57,660	40,160	25,510	20,260	16,350	12,970	9,600	6,220	2,850	-	-
2,820	2,830	58,520	41,020	25,840	20,590	16,560	13,180	9,810	6,430	3,060	-	-
2,830	2,840	59,370	41,870	26,170	20,920	16,770	13,400	10,020	6,650	3,270	-	-
2,840	2,850	60,230	42,730	26,500	21,250	16,980	13,610	10,230	6,860	3,480	-	-
2,850	2,860	61,080	43,580	26,830	21,580	17,190	13,820	10,440	7,070	3,690	-	-
2,860	2,870	61,940	44,440	27,160	21,910	17,410	14,030	10,660	7,280	3,910	-	-
2,870	2,880	62,790	45,290	27,490	22,240	17,620	14,240	10,870	7,490	4,120	-	-
2,880	2,890	63,650	46,150	27,820	22,570	17,830	14,460	11,080	7,710	4,330	-	-
2,890	2,900	64,510	47,010	28,150	22,900	18,040	14,670	11,290	7,920	4,540	1,170	-
2,900	2,910	65,360	47,860	28,480	23,230	18,250	14,880	11,500	8,130	4,750	1,380	-
2,910	2,920	66,220	48,720	28,810	23,560	18,470	15,090	11,720	8,340	4,970	1,590	-
2,920	2,930	67,070	49,570	29,140	23,890	18,680	15,300	11,930	8,550	5,180	1,800	-
2,930	2,940	67,930	50,430	29,470	24,220	18,970	15,510	12,140	8,760	5,390	2,010	-
2,940	2,950	68,780	51,280	29,800	24,550	19,300	15,730	12,350	8,980	5,600	2,230	-
2,950	2,960	69,640	52,140	30,130	24,880	19,630	15,940	12,560	9,190	5,810	2,440	-
2,960	2,970	70,500	53,000	30,460	25,210	19,960	16,150	12,780	9,400	6,030	2,650	-
2,970	2,980	71,350	53,850	30,790	25,540	20,290	16,360	12,990	9,610	6,240	2,860	-

- 58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2,980	2,990	72,210	54,710	31,120	25,870	20,620	16,570	13,200	9,820	6,450	3,070	-
2,990	3,000	73,060	55,560	31,450	26,200	20,950	16,790	13,410	10,040	6,660	3,290	-
3,000	3,020	74,350	56,850	31,940	26,690	21,440	17,100	13,730	10,350	6,980	3,600	-
3,020	3,040	76,060	58,560	32,600	27,350	22,100	17,530	14,150	10,780	7,400	4,030	-
3,040	3,060	77,770	60,270	33,260	28,010	22,760	17,950	14,580	11,200	7,830	4,450	1,080
3,060	3,080	79,480	61,980	33,920	28,670	23,420	18,380	15,000	11,630	8,250	4,880	1,500
3,080	3,100	81,190	63,690	34,580	29,330	24,080	18,830	15,430	12,050	8,680	5,300	1,930
3,100	3,120	82,900	65,400	35,240	29,990	24,740	19,490	15,850	12,470	9,100	5,720	2,350
3,120	3,140	84,620	67,120	35,900	30,650	25,400	20,150	16,270	12,900	9,520	6,150	2,770
3,140	3,160	86,330	68,830	36,560	31,310	26,060	20,810	16,700	13,320	9,950	6,570	3,200
3,160	3,180	88,040	70,540	37,220	31,970	26,720	21,470	17,120	13,750	10,370	7,000	3,620
3,180	3,200	89,750	72,250	37,880	32,630	27,380	22,130	17,540	14,170	10,790	7,420	4,040
3,200	3,220	91,460	73,960	38,540	33,290	28,040	22,790	17,970	14,590	11,220	7,840	4,470
3,220	3,240	93,170	75,670	40,120	33,950	28,700	23,450	18,390	15,020	11,640	8,270	4,890
3,240	3,260	95,430	77,380	41,770	34,610	29,360	24,110	18,860	15,440	12,070	8,690	5,320
3,260	3,280	97,880	79,100	43,420	35,270	30,020	24,770	19,520	15,870	12,490	9,120	5,740
3,280	3,300	100,320	80,810	45,070	35,920	30,670	25,420	20,170	16,290	12,910	9,540	6,160
3,300	3,320	102,770	82,520	46,720	36,580	31,330	26,080	20,830	16,710	13,340	9,960	6,590
3,320	3,340	105,210	84,230	48,370	37,240	31,990	26,740	21,490	17,140	13,760	10,390	7,010
3,340	3,360	107,660	85,940	49,940	37,870	32,620	27,370	22,120	17,540	14,170	10,790	7,420
3,360	3,380	110,100	87,650	51,510	38,500	33,250	28,000	22,750	17,950	14,570	11,200	7,820

- 59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3,380	3,400	112,550	89,370	53,070	39,950	33,880	28,630	23,380	18,350	14,970	11,600	8,220
3,400	3,420	114,990	91,080	54,640	41,510	34,500	29,250	24,000	18,750	15,370	12,000	8,620
3,420	3,440	117,440	92,790	56,200	43,080	35,130	29,880	24,630	19,380	15,780	12,400	9,030
3,440	3,460	119,880	94,880	57,770	44,640	35,750	30,500	25,250	20,000	16,180	12,800	9,430
3,460	3,480	122,330	97,330	59,330	46,210	36,380	31,130	25,880	20,630	16,580	13,210	9,830
3,480	3,500	124,770	99,770	60,900	47,770	37,010	31,760	26,510	21,260	16,980	13,610	10,230
3,500	3,520	127,220	102,220	62,460	49,340	37,630	32,380	27,130	21,880	17,390	14,010	10,640
3,520	3,540	129,660	104,660	64,030	50,900	38,260	33,010	27,760	22,510	17,790	14,410	11,040
3,540	3,560	132,110	107,110	65,590	52,460	39,340	33,630	28,380	23,130	18,190	14,820	11,440
3,560	3,580	134,550	109,550	67,150	54,030	40,900	34,260	29,010	23,760	18,590	15,220	11,840
3,580	3,600	137,000	112,000	68,720	55,590	42,470	34,880	29,630	24,380	19,130	15,620	12,250
3,600	3,620	139,440	114,440	70,280	57,160	44,030	35,510	30,260	25,010	19,760	16,020	12,650
3,620	3,640	141,890	116,890	71,850	58,720	45,600	36,140	30,890	25,640	20,390	16,420	13,050
3,640	3,660	144,330	119,330	73,410	60,290	47,160	36,760	31,510	26,260	21,010	16,830	13,450
3,660	3,680	146,780	121,780	74,980	61,850	48,730	37,390	32,140	26,890	21,640	17,230	13,850
3,680	3,700	149,220	124,220	76,540	63,420	50,290	38,010	32,760	27,510	22,260	17,630	14,260
3,700	3,720	151,670	126,670	78,110	64,980	51,860	38,730	33,390	28,140	22,890	18,030	14,660
3,720	3,740	154,110	129,110	79,670	66,550	53,420	40,300	34,020	28,770	23,520	18,440	15,060
3,740	3,760	156,560	131,560	81,230	68,110	54,980	41,860	34,640	29,390	24,140	18,890	15,460
3,760	3,780	163,920	136,090	84,260	71,130	58,010	44,880	35,850	30,600	25,350	20,100	16,240
3,780	3,800	166,590	138,740	85,970	72,850	59,720	46,600	36,540	31,290	26,040	20,790	16,680

- 60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3,800	3,820	169,260	141,400	87,680	74,560	61,430	48,310	37,220	31,970	26,720	21,470	17,120
3,820	3,840	171,930	144,050	89,390	76,270	63,140	50,020	37,900	32,650	27,400	22,150	17,560
3,840	3,860	174,600	146,710	91,100	77,980	64,850	51,730	38,600	33,340	28,090	22,840	18,000
3,860	3,880	177,270	149,360	92,820	79,690	66,570	53,440	40,320	34,020	28,770	23,520	18,440
3,880	3,900	179,940	152,020	94,920	81,400	68,280	55,150	42,030	34,710	29,460	24,210	18,960
3,900	3,920	182,610	154,670	97,370	83,110	69,990	56,860	43,740	35,390	30,140	24,890	19,640
3,920	3,940	185,280	157,330	99,810	84,830	71,700	58,580	45,450	36,080	30,830	25,580	20,330
3,940	3,960	187,950	159,980	102,260	86,540	73,410	60,290	47,160	36,760	31,510	26,260	21,010
3,960	3,980	190,620	162,640	104,700	88,250	75,120	62,000	48,870	37,450	32,200	26,950	21,700
3,980	4,000	193,290	165,290	107,150	89,960	76,840	63,710	50,590	38,130	32,880	27,630	22,380
4,000	4,020	195,960	167,950	109,590	91,670	78,550	65,420	52,300	39,170	33,570	28,320	23,070
4,020	4,040	198,630	170,600	112,040	93,380	80,260	67,130	54,010	40,880	34,250	29,000	23,750
4,040	4,060	201,300	173,260	114,480	95,730	81,970	68,840	55,720	42,590	34,930	29,680	24,430
4,060	4,080	203,970	175,910	116,930	98,180	83,680	70,560	57,430	44,310	35,620	30,370	25,120
4,080	4,100	206,640	178,570	119,370	100,620	85,390	72,270	59,140	46,020	36,300	31,050	25,800
4,100	4,120	209,310	181,220	121,820	103,070	87,100	73,980	60,850	47,730	36,990	31,740	26,490
4,120	4,140	211,980	183,880	124,260	105,510	88,820	75,690	62,570	49,440	37,670	32,420	27,170
4,140	4,160	214,650	186,530	126,710	107,960	90,530	77,400	64,280	51,150	38,360	33,110	27,860
4,160	4,180	217,320	189,190	129,150	110,400	92,240	79,110	65,990	52,860	39,740	33,790	28,540
4,180	4,200	219,990	191,840	131,600	112,850	94,100	80,830	67,700	54,580	41,450	34,480	29,230
4,200	4,220	222,660	194,500	134,040	115,290	96,540	82,540	69,410	56,290	43,160	35,160	29,910

- 61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4,220	4,240	225,330	197,150	136,490	117,740	98,990	84,250	71,120	58,000	44,870	35,850	30,600
4,240	4,260	228,000	199,810	138,930	120,180	101,430	85,960	72,830	59,710	46,580	36,530	31,280
4,260	4,280	230,670	202,460	141,380	122,630	103,880	87,670	74,550	61,420	48,300	37,220	31,970
4,280	4,300	233,340	205,120	143,820	125,070	106,320	89,380	76,260	63,130	50,010	37,900	32,650
4,300	4,320	236,010	207,770	146,270	127,520	108,770	91,090	77,970	64,840	51,720	38,590	33,330
4,320	4,340	238,680	210,430	148,710	129,960	111,210	92,810	79,680	66,560	53,430	40,310	34,020
4,340	4,360	241,350	213,080	151,160	132,410	113,660	94,910	81,390	68,270	55,140	42,020	34,700
4,360	4,380	244,020	215,740	153,600	134,850	116,100	97,350	83,100	69,980	56,850	43,730	35,390
4,380	4,400	246,690	218,390	156,050	137,300	118,550	99,800	84,820	71,690	58,570	45,440	36,070
4,400	4,420	249,360	221,050	158,490	139,740	120,990	102,240	86,530	73,400	60,280	47,150	36,760
4,420	4,440	252,030	223,700	160,940	142,190	123,440	104,690	88,240	75,110	61,990	48,860	37,440
4,440	4,460	254,700	226,360	163,380	144,630	125,880	107,130	89,950	76,820	63,700	50,570	38,130
4,460	4,480	257,370	229,010	165,830	147,080	128,330	109,580	91,660	78,540	65,410	52,290	39,160
4,480	4,500	260,040	231,670	168,270	149,520	130,770	112,020	93,370	80,250	67,120	54,000	40,870
4,500	4,520	262,840	234,460	170,850	152,100	133,350	114,600	95,850	82,050	68,930	55,800	42,680
4,520	4,540	265,650	237,250	173,430	154,680	135,930	117,180	98,430	83,860	70,730	57,610	44,480
4,540	4,560	268,450	240,040	176,010	157,260	138,510	119,760	101,010	85,670	72,540	59,420	46,290
4,560	4,580	271,260	242,830	178,590	159,840	141,090	122,340	103,590	87,470	74,350	61,220	48,100
4,580	4,600	276,560	248,120	183,670	164,920	146,170	127,420	108,670	89,920	76,150	63,030	49,900
4,600	4,620	279,370	250,910	186,250	167,500	148,750	130,000	111,250	92,500	77,960	64,830	51,710
4,620	4,640	282,170	253,700	188,830	170,080	151,330	132,580	113,830	95,080	79,760	66,640	53,510

- 62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4,640	4,660	284,980	256,490	191,410	172,660	153,910	135,160	116,410	97,660	81,570	68,450	55,320
4,660	4,680	287,780	259,280	193,990	175,240	156,490	137,740	118,990	100,240	83,380	70,250	57,130
4,680	4,700	290,590	262,070	196,570	177,820	159,070	140,320	121,570	102,820	85,180	72,060	58,930
4,700	4,720	293,390	264,860	199,150	180,400	161,650	142,900	124,150	105,400	86,990	73,860	60,740
4,720	4,740	296,200	267,650	201,730	182,980	164,230	145,480	126,730	107,980	89,230	75,670	62,540
4,740	4,760	299,000	270,440	204,310	185,560	166,810	148,060	129,310	110,560	91,810	77,480	64,350
4,760	4,780	301,810	273,230	206,890	188,140	169,390	150,640	131,890	113,140	94,390	79,280	66,160
4,780	4,800	304,610	276,020	209,470	190,720	171,970	153,220	134,470	115,720	96,970	81,090	67,960
4,800	4,820	307,420	278,810	212,050	193,300	174,550	155,800	137,050	118,300	99,550	82,890	69,770
4,820	4,840	310,220	281,600	214,630	195,880	177,130	158,380	139,630	120,880	102,130	84,700	71,570
4,840	4,860	313,030	284,390	217,210	198,460	179,710	160,960	142,210	123,460	104,710	86,510	73,380
4,860	4,880	315,830	287,180	219,790	201,040	182,290	163,540	144,790	126,040	107,290	88,540	75,190
4,880	4,900	318,640	289,970	222,370	203,620	184,870	166,120	147,370	128,620	109,870	91,120	76,990
4,900	4,920	321,440	292,760	224,950	206,200	187,450	168,700	149,950	131,200	112,450	93,700	78,800
4,920	4,940	324,250	295,550	227,530	208,780	190,030	171,280	152,530	133,780	115,030	96,280	80,600
4,940	4,960	327,050	298,340	230,110	211,360	192,610	173,860	155,110	136,360	117,610	98,860	82,410
4,960	4,980	329,860	301,130	232,690	213,940	195,190	176,440	157,690	138,940	120,190	101,440	84,220
4,980	5,000	332,660	303,920	235,270	216,520	197,770	179,020	160,270	141,520	122,770	104,020	86,020
5,000	5,020	335,470	306,710	237,850	219,100	200,350	181,600	162,850	144,100	125,350	106,600	87,850
5,020	5,040	338,270	309,500	240,430	221,680	202,930	184,180	165,430	146,680	127,930	109,180	90,430
5,040	5,060	341,080	312,290	243,010	224,260	205,510	186,760	168,010	149,260	130,510	111,760	93,010

- 63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5,060	5,080	343,880	315,080	245,590	226,840	208,090	189,340	170,590	151,840	133,090	114,340	95,590
5,080	5,100	346,690	317,870	248,170	229,420	210,670	191,920	173,170	154,420	135,670	116,920	98,170
5,100	5,120	349,490	320,660	250,750	232,000	213,250	194,500	175,750	157,000	138,250	119,500	100,750
5,120	5,140	352,300	323,450	253,330	234,580	215,830	197,080	178,330	159,580	140,830	122,080	103,330
5,140	5,160	355,100	326,240	255,910	237,160	218,410	199,660	180,910	162,160	143,410	124,660	105,910
5,160	5,180	357,910	329,030	258,490	239,740	220,990	202,240	183,490	164,740	145,990	127,240	108,490
5,180	5,200	360,710	331,820	261,070	242,320	223,570	204,820	186,070	167,320	148,570	129,820	111,070
5,200	5,220	363,520	334,610	263,650	244,900	226,150	207,400	188,650	169,900	151,150	132,400	113,650
5,220	5,240	366,320	337,400	266,230	247,480	228,730	209,980	191,230	172,480	153,730	134,980	116,230
5,240	5,260	369,130	340,190	268,810	250,060	231,310	212,560	193,810	175,060	156,310	137,560	118,810
5,260	5,280	371,930	342,980	271,390	252,640	233,890	215,140	196,390	177,640	158,890	140,140	121,390
5,280	5,300	374,740	345,770	273,970	255,220	236,470	217,720	198,970	180,220	161,470	142,720	123,970
5,300	5,320	377,540	348,560	276,550	257,800	239,050	220,300	201,550	182,800	164,050	145,300	126,550
5,320	5,340	380,350	351,350	279,130	260,380	241,630	222,880	204,130	185,380	166,630	147,880	129,130
5,340	5,360	383,150	354,140	281,710	262,960	244,210	225,460	206,710	187,960	169,210	150,460	131,710
5,360	5,380	385,960	356,930	284,290	265,540	246,790	228,040	209,290	190,540	171,790	153,040	134,290
5,380	5,400	388,760	359,720	286,870	268,120	249,370	230,620	211,870	193,120	174,370	155,620	136,870
5,400	5,420	391,570	362,510	289,450	270,700	251,950	233,200	214,450	195,700	176,950	158,200	139,450
5,420	5,440	394,370	365,300	292,030	273,280	254,530	235,780	217,030	198,280	179,530	160,780	142,030
5,440	5,460	397,180	368,090	294,610	275,860	257,110	238,360	219,610	200,860	182,110	163,360	144,610
5,460	5,480	399,980	370,880	297,190	278,440	259,690	240,940	222,190	203,440	184,690	165,940	147,190

- 64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5,480	5,500	402,790	373,670	299,770	281,020	262,270	243,520	224,770	206,020	187,270	168,520	149,770
5,500	5,520	405,590	376,460	302,350	283,600	264,850	246,100	227,350	208,600	189,850	171,100	152,350
5,520	5,540	408,400	379,250	304,930	286,180	267,430	248,680	229,930	211,180	192,430	173,680	154,930
5,540	5,560	411,200	382,040	307,510	288,760	270,010	251,260	232,510	213,760	195,010	176,260	157,510
5,560	5,580	414,010	384,830	310,090	291,340	272,590	253,840	235,090	216,340	197,590	178,840	160,090
5,580	5,600	416,810	387,620	312,670	293,920	275,170	256,420	237,670	218,920	200,170	181,420	162,670
5,600	5,620	419,620	390,410	315,250	296,500	277,750	259,000	240,250	221,500	202,750	184,000	165,250
5,620	5,640	422,420	393,200	317,830	299,080	280,330	261,580	242,830	224,080	205,330	186,580	167,830
5,640	5,660	425,230	395,990	320,410	301,660	282,910	264,160	245,410	226,660	207,910	189,160	170,410
5,660	5,680	428,030	398,780	322,990	304,240	285,490	266,740	247,990	229,240	210,490	191,740	172,990
5,680	5,700	430,840	401,570	325,570	306,820	288,070	269,320	250,570	231,820	213,070	194,320	175,570
5,700	5,720	433,640	404,360	328,150	309,400	290,650	271,900	253,150	234,400	215,650	196,900	178,150
5,720	5,740	436,450	407,150	330,730	311,980	293,230	274,480	255,730	236,980	218,230	199,480	180,730
5,740	5,760	439,250	409,940	333,310	314,560	295,810	277,060	258,310	239,560	220,810	202,060	183,310
5,760	5,780	442,060	412,730	335,890	317,140	298,390	279,640	260,890	242,140	223,390	204,640	185,890
5,780	5,800	444,860	415,520	338,470	319,720	300,970	282,220	263,470	244,720	225,970	207,220	188,470
5,800	5,820	447,670	418,310	341,050	322,300	303,550	284,800	266,050	247,300	228,550	209,800	191,050
5,820	5,840	450,470	421,100	343,630	324,880	306,130	287,380	268,630	249,880	231,130	212,380	193,630
5,840	5,860	470,380	441,000	372,100	353,350	334,600	315,850	297,100	278,350	259,600	240,850	222,100
5,860	5,880	475,720	446,320	377,240	358,490	339,740	320,990	302,240	283,490	264,740	245,990	227,240
5,880	5,900	478,690	449,140	379,880	361,130	342,380	323,630	304,880	286,130	267,380	248,630	229,880

- 65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5,900	5,920	483,220	451,960	382,520	363,770	345,020	326,270	307,520	288,770	270,020	251,270	232,520
5,920	5,940	487,760	454,780	385,160	366,410	347,660	328,910	310,160	291,410	272,660	253,910	235,160
5,940	5,960	492,300	457,600	387,800	369,050	350,300	331,550	312,800	294,050	275,300	256,550	237,800
5,960	5,980	496,830	460,420	390,440	371,690	352,940	334,190	315,440	296,690	277,940	259,190	240,440
5,980	6,000	501,370	463,240	393,080	374,330	355,580	336,830	318,080	299,330	280,580	261,830	243,080
6,000	6,020	505,900	466,060	395,720	376,970	358,220	339,470	320,720	301,970	283,220	264,470	245,720
6,020	6,040	510,440	468,880	398,360	379,610	360,860	342,110	323,360	304,610	285,860	267,110	248,360
6,040	6,060	514,980	471,700	401,000	382,250	363,500	344,750	326,000	307,250	288,500	269,750	251,000
6,060	6,080	519,510	474,520	403,640	384,890	366,140	347,390	328,640	309,890	291,140	272,390	253,640
6,080	6,100	524,050	477,340	406,280	387,530	368,780	350,030	331,280	312,530	293,780	275,030	256,280
6,100	6,120	528,580	481,250	408,920	390,170	371,420	352,670	333,920	315,170	296,420	277,670	258,920
6,120	6,140	533,120	485,760	411,560	392,810	374,060	355,310	336,560	317,810	299,060	280,310	261,560
6,140	6,160	537,660	490,280	414,200	395,450	376,700	357,950	339,200	320,450	301,700	282,950	264,200
6,160	6,180	542,190	494,790	416,840	398,090	379,340	360,590	341,840	323,090	304,340	285,590	266,840
6,180	6,200	546,730	499,300	419,480	400,730	381,980	363,230	344,480	325,730	306,980	288,230	269,480
6,200	6,220	551,260	503,810	422,120	403,370	384,620	365,870	347,120	328,370	309,620	290,870	272,120
6,220	6,240	555,800	508,320	424,760	406,010	387,260	368,510	349,760	331,010	312,260	293,510	274,760
6,240	6,260	560,340	512,840	427,400	408,650	389,900	371,150	352,400	333,650	314,900	296,150	277,400
6,260	6,280	564,870	517,350	430,040	411,290	392,540	373,790	355,040	336,290	317,540	298,790	280,040
6,280	6,300	569,410	521,860	432,680	413,930	395,180	376,430	357,680	338,930	320,180	301,430	282,680
6,300	6,320	573,940	526,370	435,320	416,570	397,820	379,070	360,320	341,570	322,820	304,070	285,320

- 66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6,320	6,340	578,480	530,880	437,960	419,210	400,460	381,710	362,960	344,210	325,460	306,710	287,960
6,340	6,360	583,020	535,400	440,600	421,850	403,100	384,350	365,600	346,850	328,100	309,350	290,600
6,360	6,380	587,550	539,910	443,240	424,490	405,740	386,990	368,240	349,490	330,740	311,990	293,240
6,380	6,400	592,090	544,420	445,880	427,130	408,380	389,630	370,880	352,130	333,380	314,630	295,880
6,400	6,420	596,620	548,930	448,520	429,770	411,020	392,270	373,520	354,770	336,020	317,270	298,520
6,420	6,440	601,160	553,440	451,160	432,410	413,660	394,910	376,160	357,410	338,660	319,910	301,160
6,440	6,460	605,700	557,960	453,800	435,050	416,300	397,550	378,800	360,050	341,300	322,550	303,800
6,460	6,480	610,230	562,470	456,440	437,690	418,940	400,190	381,440	362,690	343,940	325,190	306,440
6,480	6,500	614,770	566,980	459,080	440,330	421,580	402,830	384,080	365,330	346,580	327,830	309,080
6,500	6,520	619,300	571,490	461,720	442,970	424,220	405,470	386,720	367,970	349,220	330,470	311,720
6,520	6,540	623,840	576,000	464,360	445,610	426,860	408,110	389,360	370,610	351,860	333,110	314,360
6,540	6,560	628,380	580,520	467,000	448,250	429,500	410,750	392,000	373,250	354,500	335,750	317,000
6,560	6,580	632,910	585,030	469,640	450,890	432,140	413,390	394,640	375,890	357,140	338,390	319,640
6,580	6,600	637,450	589,540	472,280	453,530	434,780	416,030	397,280	378,530	359,780	341,030	322,280
6,600	6,620	641,980	594,050	474,920	456,170	437,420	418,670	399,920	381,170	362,420	343,670	324,920
6,620	6,640	646,520	598,560	477,560	458,810	440,060	421,310	402,560	383,810	365,060	346,310	327,560
6,640	6,660	651,060	603,080	481,320	461,450	442,700	423,950	405,200	386,450	367,700	348,950	330,200
6,660	6,680	655,590	607,590	485,540	464,090	445,340	426,590	407,840	389,090	370,340	351,590	332,840
6,680	6,700	660,130	612,100	489,760	466,730	447,980	429,230	410,480	391,730	372,980	354,230	335,480
6,700	6,720	664,660	616,610	493,990	469,370	450,620	431,870	413,120	394,370	375,620	356,870	338,120
6,720	6,740	669,200	621,120	498,210	472,010	453,260	434,510	415,760	397,010	378,260	359,510	340,760

- 67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6,740	6,760	673,740	625,640	502,440	474,650	455,900	437,150	418,400	399,650	380,900	362,150	343,400
6,760	6,780	678,270	630,150	506,660	477,290	458,540	439,790	421,040	402,290	383,540	364,790	346,040
6,780	6,800	682,810	634,660	510,880	480,880	461,180	442,430	423,680	404,930	386,180	367,430	348,680
6,800	6,820	687,340	639,170	515,110	485,110	463,820	445,070	426,320	407,570	388,820	370,070	351,320
6,820	6,840	691,880	643,680	519,330	489,330	466,460	447,710	428,960	410,210	391,460	372,710	353,960
6,840	6,860	696,420	648,200	523,560	493,560	469,100	450,350	431,600	412,850	394,100	375,350	356,600
6,860	6,880	700,950	652,710	527,780	497,780	471,740	452,990	434,240	415,490	396,740	377,990	359,240
6,880	6,900	705,490	657,220	532,000	502,000	474,380	455,630	436,880	418,130	399,380	380,630	361,880
6,900	6,920	710,020	661,730	536,230	506,230	477,020	458,270	439,520	420,770	402,020	383,270	364,520
6,920	6,940	714,560	666,240	540,450	510,450	480,450	460,910	442,160	423,410	404,660	385,910	367,160
6,940	6,960	719,100	670,760	544,680	514,680	484,680	463,550	444,800	426,050	407,300	388,550	369,800
6,960	6,980	723,630	675,270	548,900	518,900	488,900	466,190	447,440	428,690	409,940	391,190	372,440
6,980	7,000	728,170	679,780	553,120	523,120	493,120	468,830	450,080	431,330	412,580	393,830	375,080
7,000	7,020	732,700	684,290	557,350	527,350	497,350	471,470	452,720	433,970	415,220	396,470	377,720
7,020	7,040	737,240	688,800	561,570	531,570	501,570	474,110	455,360	436,610	417,860	399,110	380,360
7,040	7,060	741,780	693,320	565,800	535,800	505,800	476,750	458,000	439,250	420,500	401,750	383,000
7,060	7,080	746,310	697,830	570,020	540,020	510,020	480,020	460,640	441,890	423,140	404,390	385,640
7,080	7,100	750,850	702,340	574,240	544,240	514,240	484,240	463,280	444,530	425,780	407,030	388,280
7,100	7,120	755,380	706,850	578,470	548,470	518,470	488,470	465,920	447,170	428,420	409,670	390,920
7,120	7,140	759,920	711,360	582,690	552,690	522,690	492,690	468,560	449,810	431,060	412,310	393,560
7,140	7,160	764,460	715,880	586,920	556,920	526,920	496,920	471,200	452,450	433,700	414,950	396,200

- 68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7,160	7,180	768,990	720,390	591,140	561,140	531,140	501,140	473,840	455,090	436,340	417,590	398,840
7,180	7,200	773,530	724,900	595,360	565,360	535,360	505,360	476,480	457,730	438,980	420,230	401,480
7,200	7,220	778,060	729,410	599,590	569,590	539,590	509,590	479,590	460,370	441,620	422,870	404,120
7,220	7,240	782,600	733,920	603,810	573,810	543,810	513,810	483,810	463,010	444,260	425,510	406,760
7,240	7,260	787,140	738,440	608,040	578,040	548,040	518,040	488,040	465,650	446,900	428,150	409,400
7,260	7,280	791,670	742,950	612,260	582,260	552,260	522,260	492,260	468,290	449,540	430,790	412,040
7,280	7,300	796,210	747,460	616,480	586,480	556,480	526,480	496,480	470,930	452,180	433,430	414,680
7,300	7,320	800,740	751,970	620,710	590,710	560,710	530,710	500,710	473,570	454,820	436,070	417,320
7,320	7,340	805,280	756,480	624,930	594,930	564,930	534,930	504,930	476,210	457,460	438,710	419,960
7,340	7,360	809,820	761,000	629,160	599,160	569,160	539,160	509,160	479,160	460,100	441,350	422,600
7,360	7,380	814,350	765,510	633,380	603,380	573,380	543,380	513,380	483,380	462,740	443,990	425,240
7,380	7,400	818,890	770,020	637,600	607,600	577,600	547,600	517,600	487,600	465,380	446,630	427,880
7,400	7,420	823,420	774,530	641,830	611,830	581,830	551,830	521,830	491,830	468,020	449,270	430,520
7,420	7,440	827,960	779,040	646,050	616,050	586,050	556,050	526,050	496,050	470,660	451,910	433,160
7,440	7,460	832,500	783,560	650,280	620,280	590,280	560,280	530,280	500,280	473,300	454,550	435,800
7,460	7,480	837,030	788,070	654,500	624,500	594,500	564,500	534,500	504,500	475,940	457,190	438,440
7,480	7,500	841,570	792,580	658,720	628,720	598,720	568,720	538,720	508,720	478,720	459,830	441,080
7,500	7,520	846,100	797,090	662,950	632,950	602,950	572,950	542,950	512,950	482,950	462,470	443,720
7,520	7,540	850,640	801,600	667,170	637,170	607,170	577,170	547,170	517,170	487,170	465,110	446,360
7,540	7,560	855,180	806,120	671,400	641,400	611,400	581,400	551,400	521,400	491,400	467,750	449,000
7,560	7,580	859,710	810,630	675,620	645,620	615,620	585,620	555,620	525,620	495,620	470,390	451,640

- 69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7,580	7,600	864,250	815,140	679,840	649,840	619,840	589,840	559,840	529,840	499,840	473,030	454,280
7,600	7,620	868,780	819,650	684,070	654,070	624,070	594,070	564,070	534,070	504,070	475,670	456,920
7,620	7,640	873,320	824,160	688,290	658,290	628,290	598,290	568,290	538,290	508,290	478,310	459,560
7,640	7,660	877,860	828,680	692,520	662,520	632,520	602,520	572,520	542,520	512,520	482,520	462,200
7,660	7,680	882,390	833,190	696,740	666,740	636,740	606,740	576,740	546,740	516,740	486,740	464,840
7,680	7,700	886,930	837,700	700,960	670,960	640,960	610,960	580,960	550,960	520,960	490,960	467,480
7,700	7,720	891,460	842,210	705,190	675,190	645,190	615,190	585,190	555,190	525,190	495,190	470,120
7,720	7,740	896,000	846,720	709,410	679,410	649,410	619,410	589,410	559,410	529,410	499,410	472,760
7,740	7,760	900,540	851,240	713,640	683,640	653,640	623,640	593,640	563,640	533,640	503,640	475,400
7,760	7,780	905,070	855,750	717,860	687,860	657,860	627,860	597,860	567,860	537,860	507,860	478,040
7,780	7,800	909,610	860,260	722,080	692,080	662,080	632,080	602,080	572,080	542,080	512,080	482,080
7,800	7,820	914,140	864,770	726,310	696,310	666,310	636,310	606,310	576,310	546,310	516,310	486,310
7,820	7,840	918,680	869,280	730,530	700,530	670,530	640,530	610,530	580,530	550,530	520,530	490,530
7,840	7,860	923,220	873,800	734,760	704,760	674,760	644,760	614,760	584,760	554,760	524,760	494,760
7,860	7,880	927,750	878,310	738,980	708,980	678,980	648,980	618,980	588,980	558,980	528,980	498,980
7,880	7,900	932,290	882,820	743,200	713,200	683,200	653,200	623,200	593,200	563,200	533,200	503,200
7,900	7,920	936,820	887,330	747,430	717,430	687,430	657,430	627,430	597,430	567,430	537,430	507,430
7,920	7,940	941,360	891,840	751,650	721,650	691,650	661,650	631,650	601,650	571,650	541,650	511,650
7,940	7,960	945,900	896,360	755,880	725,880	695,880	665,880	635,880	605,880	575,880	545,880	515,880
7,960	7,980	950,430	900,870	760,100	730,100	700,100	670,100	640,100	610,100	580,100	550,100	520,100
7,980	8,000	954,970	905,380	764,320	734,320	704,320	674,320	644,320	614,320	584,320	554,320	524,320

- 70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8,000	8,020	959,500	909,890	768,550	738,550	708,550	678,550	648,550	618,550	588,550	558,550	528,550
8,020	8,040	964,040	914,400	772,770	742,770	712,770	682,770	652,770	622,770	592,770	562,770	532,770
8,040	8,060	968,580	918,920	777,000	747,000	717,000	687,000	657,000	627,000	597,000	567,000	537,000
8,060	8,080	973,110	923,430	781,220	751,220	721,220	691,220	661,220	631,220	601,220	571,220	541,220
8,080	8,100	977,650	927,940	785,440	755,440	725,440	695,440	665,440	635,440	605,440	575,440	545,440
8,100	8,120	982,180	932,450	789,670	759,670	729,670	699,670	669,670	639,670	609,670	579,670	549,670
8,120	8,140	986,720	936,960	793,890	763,890	733,890	703,890	673,890	643,890	613,890	583,890	553,890
8,140	8,160	991,260	941,480	798,120	768,120	738,120	708,120	678,120	648,120	618,120	588,120	558,120
8,160	8,180	995,790	945,990	802,340	772,340	742,340	712,340	682,340	652,340	622,340	592,340	562,340
8,180	8,200	1,000,330	950,500	806,560	776,560	746,560	716,560	686,560	656,560	626,560	596,560	566,560
8,200	8,220	1,004,860	955,010	810,790	780,790	750,790	720,790	690,790	660,790	630,790	600,790	570,790
8,220	8,240	1,009,400	959,520	815,010	785,010	755,010	725,010	695,010	665,010	635,010	605,010	575,010
8,240	8,260	1,013,940	964,040	819,240	789,240	759,240	729,240	699,240	669,240	639,240	609,240	579,240
8,260	8,280	1,018,470	968,550	823,460	793,460	763,460	733,460	703,460	673,460	643,460	613,460	583,460
8,280	8,300	1,023,010	973,060	827,680	797,680	767,680	737,680	707,680	677,680	647,680	617,680	587,680
8,300	8,320	1,027,540	977,570	831,910	801,910	771,910	741,910	711,910	681,910	651,910	621,910	591,910
8,320	8,340	1,032,080	982,080	836,130	806,130	776,130	746,130	716,130	686,130	656,130	626,130	596,130
8,340	8,360	1,036,740	986,720	840,480	810,480	780,480	750,480	720,480	690,480	660,480	630,480	600,480
8,360	8,380	1,041,420	991,370	844,840	814,840	784,840	754,840	724,840	694,840	664,840	634,840	604,840
8,380	8,400	1,046,100	996,030	849,210	819,210	789,210	759,210	729,210	699,210	669,210	639,210	609,210
8,400	8,420	1,050,780	1,000,680	853,580	823,580	793,580	763,580	733,580	703,580	673,580	643,580	613,580

- 71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8,420	8,440	1,055,460	1,005,340	857,950	827,950	797,950	767,950	737,950	707,950	677,950	647,950	617,950
8,440	8,460	1,060,140	1,010,000	862,320	832,320	802,320	772,320	742,320	712,320	682,320	652,320	622,320
8,460	8,480	1,064,820	1,014,650	866,680	836,680	806,680	776,680	746,680	716,680	686,680	656,680	626,680
8,480	8,500	1,069,500	1,019,310	871,050	841,050	811,050	781,050	751,050	721,050	691,050	661,050	631,050
8,500	8,520	1,074,180	1,023,960	875,420	845,420	815,420	785,420	755,420	725,420	695,420	665,420	635,420
8,520	8,540	1,078,860	1,028,620	879,790	849,790	819,790	789,790	759,790	729,790	699,790	669,790	639,790
8,540	8,560	1,083,540	1,033,280	884,160	854,160	824,160	794,160	764,160	734,160	704,160	674,160	644,160
8,560	8,580	1,088,220	1,037,930	888,520	858,520	828,520	798,520	768,520	738,520	708,520	678,520	648,520
8,580	8,600	1,092,900	1,042,590	892,890	862,890	832,890	802,890	772,890	742,890	712,890	682,890	652,890
8,600	8,620	1,097,580	1,047,240	897,260	867,260	837,260	807,260	777,260	747,260	717,260	687,260	657,260
8,620	8,640	1,102,260	1,051,900	901,630	871,630	841,630	811,630	781,630	751,630	721,630	691,630	661,630
8,640	8,660	1,106,940	1,056,560	906,000	876,000	846,000	816,000	786,000	756,000	726,000	696,000	666,000
8,660	8,680	1,111,620	1,061,210	910,360	880,360	850,360	820,360	790,360	760,360	730,360	700,360	670,360
8,680	8,700	1,116,300	1,065,870	914,730	884,730	854,730	824,730	794,730	764,730	734,730	704,730	674,730
8,700	8,720	1,120,980	1,070,520	919,100	889,100	859,100	829,100	799,100	769,100	739,100	709,100	679,100
8,720	8,740	1,125,660	1,075,180	923,470	893,470	863,470	833,470	803,470	773,470	743,470	713,470	683,470
8,740	8,760	1,130,340	1,079,840	927,840	897,840	867,840	837,840	807,840	777,840	747,840	717,840	687,840
8,760	8,780	1,135,020	1,084,490	932,200	902,200	872,200	842,200	812,200	782,200	752,200	722,200	692,200
8,780	8,800	1,139,700	1,089,150	936,570	906,570	876,570	846,570	816,570	786,570	756,570	726,570	696,570
8,800	8,820	1,144,380	1,093,800	940,940	910,940	880,940	850,940	820,940	790,940	760,940	730,940	700,940
8,820	8,840	1,149,060	1,098,460	945,310	915,310	885,310	855,310	825,310	795,310	765,310	735,310	705,310

- 72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8,840	8,860	1,153,740	1,103,120	949,680	919,680	889,680	859,680	829,680	799,680	769,680	739,680	709,680
8,860	8,880	1,158,420	1,107,770	954,040	924,040	894,040	864,040	834,040	804,040	774,040	744,040	714,040
8,880	8,900	1,163,100	1,112,430	958,410	928,410	898,410	868,410	838,410	808,410	778,410	748,410	718,410
8,900	8,920	1,167,780	1,117,080	962,780	932,780	902,780	872,780	842,780	812,780	782,780	752,780	722,780
8,920	8,940	1,172,460	1,121,740	967,150	937,150	907,150	877,150	847,150	817,150	787,150	757,150	727,150
8,940	8,960	1,177,140	1,126,400	971,520	941,520	911,520	881,520	851,520	821,520	791,520	761,520	731,520
8,960	8,980	1,181,820	1,131,050	975,880	945,880	915,880	885,880	855,880	825,880	795,880	765,880	735,880
8,980	9,000	1,186,500	1,135,710	980,250	950,250	920,250	890,250	860,250	830,250	800,250	770,250	740,250
9,000	9,020	1,191,180	1,140,360	984,620	954,620	924,620	894,620	864,620	834,620	804,620	774,620	744,620
9,020	9,040	1,195,860	1,145,020	988,990	958,990	928,990	898,990	868,990	838,990	808,990	778,990	748,990
9,040	9,060	1,200,540	1,149,680	993,360	963,360	933,360	903,360	873,360	843,360	813,360	783,360	753,360
9,060	9,080	1,205,220	1,154,330	997,720	967,720	937,720	907,720	877,720	847,720	817,720	787,720	757,720
9,080	9,100	1,209,900	1,158,990	1,002,090	972,090	942,090	912,090	882,090	852,090	822,090	792,090	762,090
9,100	9,120	1,214,580	1,163,640	1,006,460	976,460	946,460	916,460	886,460	856,460	826,460	796,460	766,460
9,120	9,140	1,219,260	1,168,300	1,010,830	980,830	950,830	920,830	890,830	860,830	830,830	800,830	770,830
9,140	9,160	1,223,940	1,172,960	1,015,200	985,200	955,200	925,200	895,200	865,200	835,200	805,200	775,200
9,160	9,180	1,228,620	1,177,610	1,019,560	989,560	959,560	929,560	899,560	869,560	839,560	809,560	779,560
9,180	9,200	1,233,300	1,182,270	1,023,930	993,930	963,930	933,930	903,930	873,930	843,930	813,930	783,930
9,200	9,220	1,237,980	1,186,920	1,028,300	998,300	968,300	938,300	908,300	878,300	848,300	818,300	788,300
9,220	9,240	1,244,640	1,191,580	1,032,670	1,002,670	972,670	942,670	912,670	882,670	852,670	822,670	792,670
9,240	9,260	1,251,470	1,196,240	1,037,040	1,007,040	977,040	947,040	917,040	887,040	857,040	827,040	797,040

- 73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9,260	9,280	1,258,290	1,200,890	1,041,400	1,011,400	981,400	951,400	921,400	891,400	861,400	831,400	801,400
9,280	9,300	1,265,120	1,205,550	1,045,770	1,015,770	985,770	955,770	925,770	895,770	865,770	835,770	805,770
9,300	9,320	1,271,940	1,210,200	1,050,140	1,020,140	990,140	960,140	930,140	900,140	870,140	840,140	810,140
9,320	9,340	1,278,770	1,214,860	1,054,510	1,024,510	994,510	964,510	934,510	904,510	874,510	844,510	814,510
9,340	9,360	1,285,590	1,219,520	1,058,880	1,028,880	998,880	968,880	938,880	908,880	878,880	848,880	818,880
9,360	9,380	1,292,420	1,224,170	1,063,240	1,033,240	1,003,240	973,240	943,240	913,240	883,240	853,240	823,240
9,380	9,400	1,299,240	1,228,830	1,067,610	1,037,610	1,007,610	977,610	947,610	917,610	887,610	857,610	827,610
9,400	9,420	1,306,070	1,233,480	1,071,980	1,041,980	1,011,980	981,980	951,980	921,980	891,980	861,980	831,980
9,420	9,440	1,312,890	1,238,140	1,076,350	1,046,350	1,016,350	986,350	956,350	926,350	896,350	866,350	836,350
9,440	9,460	1,319,720	1,244,840	1,080,720	1,050,720	1,020,720	990,720	960,720	930,720	900,720	870,720	840,720
9,460	9,480	1,326,540	1,251,630	1,085,080	1,055,080	1,025,080	995,080	965,080	935,080	905,080	875,080	845,080
9,480	9,500	1,333,370	1,258,420	1,089,450	1,059,450	1,029,450	999,450	969,450	939,450	909,450	879,450	849,450
9,500	9,520	1,340,190	1,265,210	1,093,820	1,063,820	1,033,820	1,003,820	973,820	943,820	913,820	883,820	853,820
9,520	9,540	1,347,020	1,272,000	1,098,190	1,068,190	1,038,190	1,008,190	978,190	948,190	918,190	888,190	858,190
9,540	9,560	1,353,840	1,278,790	1,102,560	1,072,560	1,042,560	1,012,560	982,560	952,560	922,560	892,560	862,560
9,560	9,580	1,360,670	1,285,580	1,106,920	1,076,920	1,046,920	1,016,920	986,920	956,920	926,920	896,920	866,920
9,580	9,600	1,367,490	1,292,370	1,111,290	1,081,290	1,051,290	1,021,290	991,290	961,290	931,290	901,290	871,290
9,600	9,620	1,374,320	1,299,160	1,115,660	1,085,660	1,055,660	1,025,660	995,660	965,660	935,660	905,660	875,660
9,620	9,640	1,381,140	1,305,950	1,120,030	1,090,030	1,060,030	1,030,030	1,000,030	970,030	940,030	910,030	880,030
9,640	9,660	1,387,970	1,312,740	1,124,400	1,094,400	1,064,400	1,034,400	1,004,400	974,400	944,400	914,400	884,400
9,660	9,680	1,394,790	1,319,530	1,128,760	1,098,760	1,068,760	1,038,760	1,008,760	978,760	948,760	918,760	888,760

- 74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9,680	9,700	1,401,620	1,326,320	1,133,130	1,103,130	1,073,130	1,043,130	1,013,130	983,130	953,130	923,130	893,130
9,700	9,720	1,408,440	1,333,110	1,137,500	1,107,500	1,077,500	1,047,500	1,017,500	987,500	957,500	927,500	897,500
9,720	9,740	1,415,270	1,339,900	1,141,870	1,111,870	1,081,870	1,051,870	1,021,870	991,870	961,870	931,870	901,870
9,740	9,760	1,422,090	1,346,690	1,146,240	1,116,240	1,086,240	1,056,240	1,026,240	996,240	966,240	936,240	906,240
9,760	9,780	1,428,920	1,353,480	1,150,600	1,120,600	1,090,600	1,060,600	1,030,600	1,000,600	970,600	940,600	910,600
9,780	9,800	1,435,740	1,360,270	1,154,970	1,124,970	1,094,970	1,064,970	1,034,970	1,004,970	974,970	944,970	914,970
9,800	9,820	1,442,570	1,367,060	1,159,340	1,129,340	1,099,340	1,069,340	1,039,340	1,009,340	979,340	949,340	919,340
9,820	9,840	1,449,390	1,373,850	1,163,710	1,133,710	1,103,710	1,073,710	1,043,710	1,013,710	983,710	953,710	923,710
9,840	9,860	1,456,220	1,380,640	1,168,080	1,138,080	1,108,080	1,078,080	1,048,080	1,018,080	988,080	958,080	928,080
9,860	9,880	1,463,040	1,387,430	1,172,440	1,142,440	1,112,440	1,082,440	1,052,440	1,022,440	992,440	962,440	932,440
9,880	9,900	1,469,870	1,394,220	1,176,810	1,146,810	1,116,810	1,086,810	1,056,810	1,026,810	996,810	966,810	936,810
9,900	9,920	1,476,690	1,401,010	1,181,180	1,151,180	1,121,180	1,091,180	1,061,180	1,031,180	1,001,180	971,180	941,180
9,920	9,940	1,483,520	1,407,800	1,185,550	1,155,550	1,125,550	1,095,550	1,065,550	1,035,550	1,005,550	975,550	945,550
9,940	9,960	1,490,340	1,414,590	1,189,920	1,159,920	1,129,920	1,099,920	1,069,920	1,039,920	1,009,920	979,920	949,920
9,960	9,980	1,497,170	1,421,380	1,194,280	1,164,280	1,134,280	1,104,280	1,074,280	1,044,280	1,014,280	984,280	954,280
9,980	10,000	1,503,990	1,428,170	1,198,650	1,168,650	1,138,650	1,108,650	1,078,650	1,048,650	1,018,650	988,650	958,650
10,000천원		1,507,400	1,431,570	1,200,840	1,170,840	1,140,840	1,110,840	1,080,840	1,050,840	1,020,840	990,840	960,840
10,000천원 초과 14,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35퍼센트 상당액) + (25,000원)										
14,000천원 초과 28,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97,000원) + (14,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38퍼센트 상당액)										
28,000천원 초과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6,610,600원) + (28,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40퍼센트 상당액)										

- 75 -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30,000천원 이하											
30,000천원 초과 45,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7,410,600원) + (3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상당액)										
45,000천원 초과 87,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410,600원) + (45,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상당액)										
87,000천원 초과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31,050,600원) + (87,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상당액)										

- 76 -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

- 주: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2. 공제대상 가족수가 7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 가.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명인 경우의 세액
- 나.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6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명인 경우의 세액) × 7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70세 이상자가 없는 경우)

(단위: 원)

공제대상 가족수		1	2	3	4	5	6	7
월환산액(천원)	월환산액(천원)							
560	565	0	0	0	0	0	0	0
565	570	0	0	0	0	0	0	0
570	575	0	0	0	0	0	0	0
575	580	0	0	0	0	0	0	0
580	585	0	0	0	0	0	0	0
585	590	0	0	0	0	0	0	0
590	595	0	0	0	0	0	0	0
595	600	0	0	0	0	0	0	0
600	605	0	0	0	0	0	0	0
605	610	0	0	0	0	0	0	0
610	615	0	0	0	0	0	0	0
615	620	0	0	0	0	0	0	0
620	625	0	0	0	0	0	0	0
625	630	0	0	0	0	0	0	0
630	635	0	0	0	0	0	0	0
635	640	0	0	0	0	0	0	0
640	645	0	0	0	0	0	0	0
645	650	0	0	0	0	0	0	0
650	655	0	0	0	0	0	0	0
655	660	0	0	0	0	0	0	0
660	665	0	0	0	0	0	0	0
665	670	1,200	0	0	0	0	0	0
670	675	1,440	0	0	0	0	0	0
675	680	1,680	0	0	0	0	0	0
680	685	1,920	0	0	0	0	0	0
685	690	2,160	0	0	0	0	0	0
690	695	2,400	0	0	0	0	0	0
695	700	2,640	0	0	0	0	0	0
700	705	2,880	0	0	0	0	0	0
705	710	3,120	0	0	0	0	0	0
710	715	3,360	0	0	0	0	0	0
715	720	3,600	0	0	0	0	0	0

720	725	3,840	0	0	0	0	0	0
725	730	4,080	0	0	0	0	0	0
730	735	4,320	0	0	0	0	0	0
735	740	4,560	0	0	0	0	0	0
740	745	4,800	0	0	0	0	0	0
745	750	5,040	0	0	0	0	0	0
750	755	5,280	0	0	0	0	0	0
755	760	5,520	0	0	0	0	0	0
760	765	5,760	0	0	0	0	0	0
765	770	6,000	0	0	0	0	0	0
770	775	6,240	0	0	0	0	0	0
775	780	6,480	0	0	0	0	0	0
780	785	6,720	0	0	0	0	0	0
785	790	6,960	0	0	0	0	0	0
790	795	7,200	0	0	0	0	0	0
795	800	7,440	0	0	0	0	0	0
800	805	7,680	0	0	0	0	0	0
805	810	7,920	0	0	0	0	0	0
810	815	8,160	0	0	0	0	0	0
815	820	8,400	0	0	0	0	0	0
820	825	8,640	1,140	0	0	0	0	0
825	830	8,880	1,380	0	0	0	0	0
830	835	9,120	1,620	0	0	0	0	0
835	840	9,360	1,860	0	0	0	0	0
840	845	9,600	2,100	0	0	0	0	0
845	850	9,840	2,340	0	0	0	0	0
850	855	10,080	2,580	0	0	0	0	0
855	860	10,320	2,820	0	0	0	0	0
860	865	10,560	3,060	0	0	0	0	0
865	870	10,800	3,300	0	0	0	0	0
870	875	11,040	3,540	0	0	0	0	0
875	880	11,280	3,780	0	0	0	0	0
880	885	11,520	4,020	0	0	0	0	0
885	890	11,760	4,260	0	0	0	0	0
890	895	12,000	4,500	0	0	0	0	0
895	900	12,240	4,740	0	0	0	0	0
900	905	12,480	4,980	0	0	0	0	0
905	910	12,720	5,220	0	0	0	0	0
910	915	12,960	5,460	0	0	0	0	0
915	920	13,200	5,700	0	0	0	0	0
920	925	13,440	5,940	0	0	0	0	0
925	930	13,680	6,180	0	0	0	0	0
930	935	13,920	6,420	0	0	0	0	0
935	940	14,160	6,660	0	0	0	0	0
940	945	14,400	6,900	0	0	0	0	0
945	950	14,640	7,140	0	0	0	0	0
950	955	14,880	7,380	0	0	0	0	0
955	960	15,120	7,620	0	0	0	0	0
960	965	15,360	7,860	0	0	0	0	0
965	970	15,600	8,100	0	0	0	0	0
970	975	15,840	8,340	0	0	0	0	0
975	980	16,080	8,580	1,080	0	0	0	0
980	985	16,320	8,820	1,320	0	0	0	0
985	990	16,560	9,060	1,560	0	0	0	0

990	995	16,800	9,300	1,800	0	0	0	0
995	1,000	17,040	9,540	2,040	0	0	0	0
1,000	1,010	17,400	9,900	2,400	0	0	0	0
1,010	1,020	17,880	10,380	2,880	0	0	0	0
1,020	1,030	18,360	10,860	3,360	0	0	0	0
1,030	1,040	18,840	11,340	3,840	0	0	0	0
1,040	1,050	19,320	11,820	4,320	0	0	0	0
1,050	1,060	19,800	12,300	4,800	0	0	0	0
1,060	1,070	20,280	12,780	5,280	0	0	0	0
1,070	1,080	20,760	13,260	5,760	0	0	0	0
1,080	1,090	21,240	13,740	6,240	0	0	0	0
1,090	1,100	21,720	14,220	6,720	0	0	0	0
1,100	1,110	22,200	14,700	7,200	0	0	0	0
1,110	1,120	22,680	15,180	7,680	0	0	0	0
1,120	1,130	23,160	15,660	8,160	0	0	0	0
1,130	1,140	23,640	16,140	8,640	1,140	0	0	0
1,140	1,150	24,120	16,620	9,120	1,620	0	0	0
1,150	1,160	24,600	17,100	9,600	2,100	0	0	0
1,160	1,170	25,080	17,580	10,080	2,580	0	0	0
1,170	1,180	25,610	18,110	10,610	3,110	0	0	0
1,180	1,190	26,150	18,650	11,150	3,650	0	0	0
1,190	1,200	26,690	19,190	11,690	4,190	0	0	0
1,200	1,210	27,230	19,730	12,230	4,730	0	0	0
1,210	1,220	27,770	20,270	12,770	5,270	0	0	0
1,220	1,230	28,310	20,810	13,310	5,810	0	0	0
1,230	1,240	28,850	21,350	13,850	6,350	0	0	0
1,240	1,250	29,390	21,890	14,390	6,890	0	0	0
1,250	1,260	29,930	22,430	14,930	7,430	0	0	0
1,260	1,270	30,470	22,970	15,470	7,970	0	0	0
1,270	1,280	31,010	23,510	16,010	8,510	1,010	0	0
1,280	1,290	31,550	24,050	16,550	9,050	1,550	0	0
1,290	1,300	32,090	24,590	17,090	9,590	2,090	0	0
1,300	1,310	32,630	25,130	17,630	10,130	2,630	0	0
1,310	1,320	33,170	25,670	18,170	10,670	3,170	0	0
1,320	1,330	33,710	26,210	18,710	11,210	3,710	0	0
1,330	1,340	34,250	26,750	19,250	11,750	4,250	0	0
1,340	1,350	34,790	27,290	19,790	12,290	4,790	0	0
1,350	1,360	35,330	27,830	20,330	12,830	5,330	0	0
1,360	1,370	35,870	28,370	20,870	13,370	5,870	0	0
1,370	1,380	36,410	28,910	21,410	13,910	6,410	0	0
1,380	1,390	36,950	29,450	21,950	14,450	6,950	0	0
1,390	1,400	37,490	29,990	22,490	14,990	7,490	0	0
1,400	1,410	38,030	30,530	23,030	15,530	8,030	0	0
1,410	1,420	38,570	31,070	23,570	16,070	8,570	1,070	0
1,420	1,430	39,110	31,610	24,110	16,610	9,110	1,610	0
1,430	1,440	39,650	32,150	24,650	17,150	9,650	2,150	0
1,440	1,450	40,190	32,690	25,190	17,690	10,190	2,690	0
1,450	1,460	40,730	33,230	25,730	18,230	10,730	3,230	0
1,460	1,470	41,270	33,770	26,270	18,770	11,270	3,770	0
1,470	1,480	41,810	34,310	26,810	19,310	11,810	4,310	0
1,480	1,490	42,350	34,850	27,350	19,850	12,350	4,850	0
1,490	1,500	42,890	35,390	27,890	20,390	12,890	5,390	0
1,500	1,510	43,430	35,930	28,430	20,930	13,430	5,930	0
1,510	1,520	43,970	36,470	28,970	21,470	13,970	6,470	0

1,520	1,530	44,510	37,010	29,510	22,010	14,510	7,010	0
1,530	1,540	45,050	37,550	30,050	22,550	15,050	7,550	0
1,540	1,550	45,590	38,090	30,590	23,090	15,590	8,090	0
1,550	1,560	46,130	38,630	31,130	23,630	16,130	8,630	1,130
1,560	1,570	46,670	39,170	31,670	24,170	16,670	9,170	1,670
1,570	1,580	47,210	39,710	32,210	24,710	17,210	9,710	2,210
1,580	1,590	47,750	40,250	32,750	25,250	17,750	10,250	2,750
1,590	1,600	48,290	40,790	33,290	25,790	18,290	10,790	3,290
1,600	1,610	48,830	41,330	33,830	26,330	18,830	11,330	3,830
1,610	1,620	49,370	41,870	34,370	26,870	19,370	11,870	4,370
1,620	1,630	49,910	42,410	34,910	27,410	19,910	12,410	4,910
1,630	1,640	50,450	42,950	35,450	27,950	20,450	12,950	5,450
1,640	1,650	50,990	43,490	35,990	28,490	20,990	13,490	5,990
1,650	1,660	51,530	44,030	36,530	29,030	21,530	14,030	6,530
1,660	1,670	52,070	44,570	37,070	29,570	22,070	14,570	7,070
1,670	1,680	52,610	45,110	37,610	30,110	22,610	15,110	7,610
1,680	1,690	53,150	45,650	38,150	30,650	23,150	15,650	8,150
1,690	1,700	53,690	46,190	38,690	31,190	23,690	16,190	8,690
1,700	1,710	54,230	46,730	39,230	31,730	24,230	16,730	9,230
1,710	1,720	54,770	47,270	39,770	32,270	24,770	17,270	9,770
1,720	1,730	55,310	47,810	40,310	32,810	25,310	17,810	10,310
1,730	1,740	55,850	48,350	40,850	33,350	25,850	18,350	10,850
1,740	1,750	56,390	48,890	41,390	33,890	26,390	18,890	11,390
1,750	1,760	56,930	49,430	41,930	34,430	26,930	19,430	11,930
1,760	1,770	57,470	49,970	42,470	34,970	27,470	19,970	12,470
1,770	1,780	58,010	50,510	43,010	35,510	28,010	20,510	13,010
1,780	1,790	58,550	51,050	43,550	36,050	28,550	21,050	13,550
1,790	1,800	59,090	51,590	44,090	36,590	29,090	21,590	14,090
1,800	1,810	59,630	52,130	44,630	37,130	29,630	22,130	14,630
1,810	1,820	60,170	52,670	45,170	37,670	30,170	22,670	15,170
1,820	1,830	60,710	53,210	45,710	38,210	30,710	23,210	15,710
1,830	1,840	61,250	53,750	46,250	38,750	31,250	23,750	16,250
1,840	1,850	61,790	54,290	46,790	39,290	31,790	24,290	16,790
1,850	1,860	62,330	54,830	47,330	39,830	32,330	24,830	17,330
1,860	1,870	62,870	55,370	47,870	40,370	32,870	25,370	17,870
1,870	1,880	63,410	55,910	48,410	40,910	33,410	25,910	18,410
1,880	1,890	63,950	56,450	48,950	41,450	33,950	26,450	18,950
1,890	1,900	64,990	56,990	49,490	41,990	34,490	26,990	19,490
1,900	1,910	66,340	57,530	50,030	42,530	35,030	27,530	20,030
1,910	1,920	67,690	58,070	50,570	43,070	35,570	28,070	20,570
1,920	1,930	69,040	58,610	51,110	43,610	36,110	28,610	21,110
1,930	1,940	70,390	59,150	51,650	44,150	36,650	29,150	21,650
1,940	1,950	71,740	59,690	52,190	44,690	37,190	29,690	22,190
1,950	1,960	73,090	60,230	52,730	45,230	37,730	30,230	22,730
1,960	1,970	74,440	60,770	53,270	45,770	38,270	30,770	23,270
1,970	1,980	75,790	61,310	53,810	46,310	38,810	31,310	23,810
1,980	1,990	77,140	61,850	54,350	46,850	39,350	31,850	24,350
1,990	2,000	78,490	62,390	54,890	47,390	39,890	32,390	24,890
2,000	2,020	80,510	63,200	55,700	48,200	40,700	33,200	25,700
2,020	2,040	83,210	64,460	56,780	49,280	41,780	34,280	26,780
2,040	2,060	85,910	67,160	57,860	50,360	42,860	35,360	27,860
2,060	2,080	88,610	69,860	58,940	51,440	43,940	36,440	28,940
2,080	2,100	91,310	72,560	60,020	52,520	45,020	37,520	30,020
2,100	2,120	94,010	75,260	61,100	53,600	46,100	38,600	31,100

2,120	2,140	96,710	77,960	62,180	54,680	47,180	39,680	32,180
2,140	2,160	99,410	80,660	63,260	55,760	48,260	40,760	33,260
2,160	2,180	102,110	83,360	64,610	56,840	49,340	41,840	34,340
2,180	2,200	104,810	86,060	67,310	57,920	50,420	42,920	35,420
2,200	2,220	107,510	88,760	70,010	59,000	51,500	44,000	36,500
2,220	2,240	110,210	91,460	72,710	60,080	52,580	45,080	37,580
2,240	2,260	112,910	94,160	75,410	61,160	53,660	46,160	38,660
2,260	2,280	115,610	96,860	78,110	62,240	54,740	47,240	39,740
2,280	2,300	118,310	99,560	80,810	63,320	55,820	48,320	40,820
2,300	2,320	121,010	102,260	83,510	64,760	56,900	49,400	41,900
2,320	2,340	123,710	104,960	86,210	67,460	57,980	50,480	42,980
2,340	2,360	126,410	107,660	88,910	70,160	59,060	51,560	44,060
2,360	2,380	129,110	110,360	91,610	72,860	60,140	52,640	45,140
2,380	2,400	131,810	113,060	94,310	75,560	61,220	53,720	46,220
2,400	2,420	134,510	115,760	97,010	78,260	62,300	54,800	47,300
2,420	2,440	137,210	118,460	99,710	80,960	63,380	55,880	48,380
2,440	2,460	139,910	121,160	102,410	83,660	64,910	56,960	49,460
2,460	2,480	142,610	123,860	105,110	86,360	67,610	58,040	50,540
2,480	2,500	145,310	126,560	107,810	89,060	70,310	59,120	51,620
2,500	2,520	148,010	129,260	110,510	91,760	73,010	60,200	52,700
2,520	2,540	150,710	131,960	113,210	94,460	75,710	61,280	53,780
2,540	2,560	153,410	134,660	115,910	97,160	78,410	62,360	54,860
2,560	2,580	156,110	137,360	118,610	99,860	81,110	63,440	55,940
2,580	2,600	158,810	140,060	121,310	102,560	83,810	65,060	57,020
2,600	2,620	161,510	142,760	124,010	105,260	86,510	67,760	58,100
2,620	2,640	164,210	145,460	126,710	107,960	89,210	70,460	59,180
2,640	2,660	166,910	148,160	129,410	110,660	91,910	73,160	60,260
2,660	2,680	169,610	150,860	132,110	113,360	94,610	75,860	61,340
2,680	2,700	172,310	153,560	134,810	116,060	97,310	78,560	62,420
2,700	2,720	175,010	156,260	137,510	118,760	100,010	81,260	63,500
2,720	2,740	177,710	158,960	140,210	121,460	102,710	83,960	65,210
2,740	2,760	180,410	161,660	142,910	124,160	105,410	86,660	67,910
2,760	2,780	183,110	164,360	145,610	126,860	108,110	89,360	70,610
2,780	2,800	185,810	167,060	148,310	129,560	110,810	92,060	73,310
2,800	2,820	188,510	169,760	151,010	132,260	113,510	94,760	76,010
2,820	2,840	191,210	172,460	153,710	134,960	116,210	97,460	78,710
2,840	2,860	193,910	175,160	156,410	137,660	118,910	100,160	81,410
2,860	2,880	196,610	177,860	159,110	140,360	121,610	102,860	84,110
2,880	2,900	199,310	180,560	161,810	143,060	124,310	105,560	86,810
2,900	2,920	202,010	183,260	164,510	145,760	127,010	108,260	89,510
2,920	2,940	204,710	185,960	167,210	148,460	129,710	110,960	92,210
2,940	2,960	207,410	188,660	169,910	151,160	132,410	113,660	94,910
2,960	2,980	210,110	191,360	172,610	153,860	135,110	116,360	97,610
2,980	3,000	212,810	194,060	175,310	156,560	137,810	119,060	100,310
3,000	3,020	215,510	196,760	178,010	159,260	140,510	121,760	103,010
3,020	3,040	218,210	199,460	180,710	161,960	143,210	124,460	105,710
3,040	3,060	220,910	202,160	183,410	164,660	145,910	127,160	108,410
3,060	3,080	223,610	204,860	186,110	167,360	148,610	129,860	111,110
3,080	3,100	226,310	207,560	188,810	170,060	151,310	132,560	113,810
3,100	3,120	229,010	210,260	191,510	172,760	154,010	135,260	116,510
3,120	3,140	231,710	212,960	194,210	175,460	156,710	137,960	119,210
3,140	3,160	234,410	215,660	196,910	178,160	159,410	140,660	121,910
3,160	3,180	237,110	218,360	199,610	180,860	162,110	143,360	124,610
3,180	3,200	239,810	221,060	202,310	183,560	164,810	146,060	127,310

3,200	3,220	242,510	223,760	205,010	186,260	167,510	148,760	130,010
3,220	3,240	245,210	226,460	207,710	188,960	170,210	151,460	132,710
3,240	3,260	247,910	229,160	210,410	191,660	172,910	154,160	135,410
3,260	3,280	250,610	231,860	213,110	194,360	175,610	156,860	138,110
3,280	3,300	253,310	234,560	215,810	197,060	178,310	159,560	140,810
3,300	3,320	256,010	237,260	218,510	199,760	181,010	162,260	143,510
3,320	3,340	258,710	239,960	221,210	202,460	183,710	164,960	146,210
3,340	3,360	261,410	242,660	223,910	205,160	186,410	167,660	148,910
3,360	3,380	264,110	245,360	226,610	207,860	189,110	170,360	151,610
3,380	3,400	266,810	248,060	229,310	210,560	191,810	173,060	154,310
3,400	3,420	269,510	250,760	232,010	213,260	194,510	175,760	157,010
3,420	3,440	272,410	253,660	234,910	216,160	197,410	178,660	159,910
3,440	3,460	275,410	256,660	237,910	219,160	200,410	181,660	162,910
3,460	3,480	278,410	259,660	240,910	222,160	203,410	184,660	165,910
3,480	3,500	281,410	262,660	243,910	225,160	206,410	187,660	168,910
3,500	3,520	284,410	265,660	246,910	228,160	209,410	190,660	171,910
3,520	3,540	287,410	268,660	249,910	231,160	212,410	193,660	174,910
3,540	3,560	290,410	271,660	252,910	234,160	215,410	196,660	177,910
3,560	3,580	293,410	274,660	255,910	237,160	218,410	199,660	180,910
3,580	3,600	296,410	277,660	258,910	240,160	221,410	202,660	183,910
3,600	3,620	299,410	280,660	261,910	243,160	224,410	205,660	186,910
3,620	3,640	302,410	283,660	264,910	246,160	227,410	208,660	189,910
3,640	3,660	305,410	286,660	267,910	249,160	230,410	211,660	192,910
3,660	3,680	308,410	289,660	270,910	252,160	233,410	214,660	195,910
3,680	3,700	311,410	292,660	273,910	255,160	236,410	217,660	198,910
3,700	3,720	314,410	295,660	276,910	258,160	239,410	220,660	201,910
3,720	3,740	317,410	298,660	279,910	261,160	242,410	223,660	204,910
3,740	3,760	320,410	301,660	282,910	264,160	245,410	226,660	207,910
3,760	3,780	323,410	304,660	285,910	267,160	248,410	229,660	210,910
3,780	3,800	326,410	307,660	288,910	270,160	251,410	232,660	213,910
3,800	3,820	329,410	310,660	291,910	273,160	254,410	235,660	216,910
3,820	3,840	332,410	313,660	294,910	276,160	257,410	238,660	219,910
3,840	3,860	335,410	316,660	297,910	279,160	260,410	241,660	222,910
3,860	3,880	338,410	319,660	300,910	282,160	263,410	244,660	225,910
3,880	3,900	341,410	322,660	303,910	285,160	266,410	247,660	228,910
3,900	3,920	344,410	325,660	306,910	288,160	269,410	250,660	231,910
3,920	3,940	347,410	328,660	309,910	291,160	272,410	253,660	234,910
3,940	3,960	350,410	331,660	312,910	294,160	275,410	256,660	237,910
3,960	3,980	353,410	334,660	315,910	297,160	278,410	259,660	240,910
3,980	4,000	356,410	337,660	318,910	300,160	281,410	262,660	243,910
4,000이상		357,910	339,160	320,410	301,660	282,910	264,160	245,410

(70세 이상자가 1명인 경우)

(단위 : 원)

공제대상 가족수 월 환산액(천원)		1	2	3	4	5	6	7
670	675	0	0	0	0	0	0	0
675	680	0	0	0	0	0	0	0
680	685	0	0	0	0	0	0	0
685	690	0	0	0	0	0	0	0
690	695	0	0	0	0	0	0	0
695	700	0	0	0	0	0	0	0
700	705	0	0	0	0	0	0	0

705	710	0	0	0	0	0	0	0
710	715	0	0	0	0	0	0	0
715	720	0	0	0	0	0	0	0
720	725	0	0	0	0	0	0	0
725	730	0	0	0	0	0	0	0
730	735	0	0	0	0	0	0	0
735	740	0	0	0	0	0	0	0
740	745	0	0	0	0	0	0	0
745	750	0	0	0	0	0	0	0
750	755	0	0	0	0	0	0	0
755	760	0	0	0	0	0	0	0
760	765	0	0	0	0	0	0	0
765	770	1,000	0	0	0	0	0	0
770	775	1,240	0	0	0	0	0	0
775	780	1,480	0	0	0	0	0	0
780	785	1,720	0	0	0	0	0	0
785	790	1,960	0	0	0	0	0	0
790	795	2,200	0	0	0	0	0	0
795	800	2,440	0	0	0	0	0	0
800	805	2,680	0	0	0	0	0	0
805	810	2,920	0	0	0	0	0	0
810	815	3,160	0	0	0	0	0	0
815	820	3,400	0	0	0	0	0	0
820	825	3,640	0	0	0	0	0	0
825	830	3,880	0	0	0	0	0	0
830	835	4,120	0	0	0	0	0	0
835	840	4,360	0	0	0	0	0	0
840	845	4,600	0	0	0	0	0	0
845	850	4,840	0	0	0	0	0	0
850	855	5,080	0	0	0	0	0	0
855	860	5,320	0	0	0	0	0	0
860	865	5,560	0	0	0	0	0	0
865	870	5,800	0	0	0	0	0	0
870	875	6,040	0	0	0	0	0	0
875	880	6,280	0	0	0	0	0	0
880	885	6,520	0	0	0	0	0	0
885	890	6,760	0	0	0	0	0	0
890	895	7,000	0	0	0	0	0	0
895	900	7,240	0	0	0	0	0	0
900	905	7,480	0	0	0	0	0	0
905	910	7,720	0	0	0	0	0	0
910	915	7,960	0	0	0	0	0	0
915	920	8,200	0	0	0	0	0	0
920	925	8,440	0	0	0	0	0	0
925	930	8,680	1,180	0	0	0	0	0
930	935	8,920	1,420	0	0	0	0	0
935	940	9,160	1,660	0	0	0	0	0
940	945	9,400	1,900	0	0	0	0	0
945	950	9,640	2,140	0	0	0	0	0
950	955	9,880	2,380	0	0	0	0	0
955	960	10,120	2,620	0	0	0	0	0
960	965	10,360	2,860	0	0	0	0	0
965	970	10,600	3,100	0	0	0	0	0
970	975	10,840	3,340	0	0	0	0	0

975	980	11,080	3,580	0	0	0	0	0
980	985	11,320	3,820	0	0	0	0	0
985	990	11,560	4,060	0	0	0	0	0
990	995	11,800	4,300	0	0	0	0	0
995	1,000	12,040	4,540	0	0	0	0	0
1,000	1,010	12,400	4,900	0	0	0	0	0
1,010	1,020	12,880	5,380	0	0	0	0	0
1,020	1,030	13,360	5,860	0	0	0	0	0
1,030	1,040	13,840	6,340	0	0	0	0	0
1,040	1,050	14,320	6,820	0	0	0	0	0
1,050	1,060	14,800	7,300	0	0	0	0	0
1,060	1,070	15,280	7,780	0	0	0	0	0
1,070	1,080	15,760	8,260	0	0	0	0	0
1,080	1,090	16,240	8,740	1,240	0	0	0	0
1,090	1,100	16,720	9,220	1,720	0	0	0	0
1,100	1,110	17,200	9,700	2,200	0	0	0	0
1,110	1,120	17,680	10,180	2,680	0	0	0	0
1,120	1,130	18,160	10,660	3,160	0	0	0	0
1,130	1,140	18,640	11,140	3,640	0	0	0	0
1,140	1,150	19,120	11,620	4,120	0	0	0	0
1,150	1,160	19,600	12,100	4,600	0	0	0	0
1,160	1,170	20,080	12,580	5,080	0	0	0	0
1,170	1,180	20,610	13,110	5,610	0	0	0	0
1,180	1,190	21,150	13,650	6,150	0	0	0	0
1,190	1,200	21,690	14,190	6,690	0	0	0	0
1,200	1,210	22,230	14,730	7,230	0	0	0	0
1,210	1,220	22,770	15,270	7,770	0	0	0	0
1,220	1,230	23,310	15,810	8,310	0	0	0	0
1,230	1,240	23,850	16,350	8,850	1,350	0	0	0
1,240	1,250	24,390	16,890	9,390	1,890	0	0	0
1,250	1,260	24,930	17,430	9,930	2,430	0	0	0
1,260	1,270	25,470	17,970	10,470	2,970	0	0	0
1,270	1,280	26,010	18,510	11,010	3,510	0	0	0
1,280	1,290	26,550	19,050	11,550	4,050	0	0	0
1,290	1,300	27,090	19,590	12,090	4,590	0	0	0
1,300	1,310	27,630	20,130	12,630	5,130	0	0	0
1,310	1,320	28,170	20,670	13,170	5,670	0	0	0
1,320	1,330	28,710	21,210	13,710	6,210	0	0	0
1,330	1,340	29,250	21,750	14,250	6,750	0	0	0
1,340	1,350	29,790	22,290	14,790	7,290	0	0	0
1,350	1,360	30,330	22,830	15,330	7,830	0	0	0
1,360	1,370	30,870	23,370	15,870	8,370	0	0	0
1,370	1,380	31,410	23,910	16,410	8,910	1,410	0	0
1,380	1,390	31,950	24,450	16,950	9,450	1,950	0	0
1,390	1,400	32,490	24,990	17,490	9,990	2,490	0	0
1,400	1,410	33,030	25,530	18,030	10,530	3,030	0	0
1,410	1,420	33,570	26,070	18,570	11,070	3,570	0	0
1,420	1,430	34,110	26,610	19,110	11,610	4,110	0	0
1,430	1,440	34,650	27,150	19,650	12,150	4,650	0	0
1,440	1,450	35,190	27,690	20,190	12,690	5,190	0	0
1,450	1,460	35,730	28,230	20,730	13,230	5,730	0	0
1,460	1,470	36,270	28,770	21,270	13,770	6,270	0	0
1,470	1,480	36,810	29,310	21,810	14,310	6,810	0	0
1,480	1,490	37,350	29,850	22,350	14,850	7,350	0	0

1,490	1,500	37,890	30,390	22,890	15,390	7,890	0	0
1,500	1,510	38,430	30,930	23,430	15,930	8,430	0	0
1,510	1,520	38,970	31,470	23,970	16,470	8,970	1,470	0
1,520	1,530	39,510	32,010	24,510	17,010	9,510	2,010	0
1,530	1,540	40,050	32,550	25,050	17,550	10,050	2,550	0
1,540	1,550	40,590	33,090	25,590	18,090	10,590	3,090	0
1,550	1,560	41,130	33,630	26,130	18,630	11,130	3,630	0
1,560	1,570	41,670	34,170	26,670	19,170	11,670	4,170	0
1,570	1,580	42,210	34,710	27,210	19,710	12,210	4,710	0
1,580	1,590	42,750	35,250	27,750	20,250	12,750	5,250	0
1,590	1,600	43,290	35,790	28,290	20,790	13,290	5,790	0
1,600	1,610	43,830	36,330	28,830	21,330	13,830	6,330	0
1,610	1,620	44,370	36,870	29,370	21,870	14,370	6,870	0
1,620	1,630	44,910	37,410	29,910	22,410	14,910	7,410	0
1,630	1,640	45,450	37,950	30,450	22,950	15,450	7,950	0
1,640	1,650	45,990	38,490	30,990	23,490	15,990	8,490	0
1,650	1,660	46,530	39,030	31,530	24,030	16,530	9,030	1,530
1,660	1,670	47,070	39,570	32,070	24,570	17,070	9,570	2,070
1,670	1,680	47,610	40,110	32,610	25,110	17,610	10,110	2,610
1,680	1,690	48,150	40,650	33,150	25,650	18,150	10,650	3,150
1,690	1,700	48,690	41,190	33,690	26,190	18,690	11,190	3,690
1,700	1,710	49,230	41,730	34,230	26,730	19,230	11,730	4,230
1,710	1,720	49,770	42,270	34,770	27,270	19,770	12,270	4,770
1,720	1,730	50,310	42,810	35,310	27,810	20,310	12,810	5,310
1,730	1,740	50,850	43,350	35,850	28,350	20,850	13,350	5,850
1,740	1,750	51,390	43,890	36,390	28,890	21,390	13,890	6,390
1,750	1,760	51,930	44,430	36,930	29,430	21,930	14,430	6,930
1,760	1,770	52,470	44,970	37,470	29,970	22,470	14,970	7,470
1,770	1,780	53,010	45,510	38,010	30,510	23,010	15,510	8,010
1,780	1,790	53,550	46,050	38,550	31,050	23,550	16,050	8,550
1,790	1,800	54,090	46,590	39,090	31,590	24,090	16,590	9,090
1,800	1,810	54,630	47,130	39,630	32,130	24,630	17,130	9,630
1,810	1,820	55,170	47,670	40,170	32,670	25,170	17,670	10,170
1,820	1,830	55,710	48,210	40,710	33,210	25,710	18,210	10,710
1,830	1,840	56,250	48,750	41,250	33,750	26,250	18,750	11,250
1,840	1,850	56,790	49,290	41,790	34,290	26,790	19,290	11,790
1,850	1,860	57,330	49,830	42,330	34,830	27,330	19,830	12,330
1,860	1,870	57,870	50,370	42,870	35,370	27,870	20,370	12,870
1,870	1,880	58,410	50,910	43,410	35,910	28,410	20,910	13,410
1,880	1,890	58,950	51,450	43,950	36,450	28,950	21,450	13,950
1,890	1,900	59,490	51,990	44,490	36,990	29,490	21,990	14,490
1,900	1,910	60,030	52,530	45,030	37,530	30,030	22,530	15,030
1,910	1,920	60,570	53,070	45,570	38,070	30,570	23,070	15,570
1,920	1,930	61,110	53,610	46,110	38,610	31,110	23,610	16,110
1,930	1,940	61,650	54,150	46,650	39,150	31,650	24,150	16,650
1,940	1,950	62,190	54,690	47,190	39,690	32,190	24,690	17,190
1,950	1,960	62,730	55,230	47,730	40,230	32,730	25,230	17,730
1,960	1,970	63,270	55,770	48,270	40,770	33,270	25,770	18,270
1,970	1,980	63,810	56,310	48,810	41,310	33,810	26,310	18,810
1,980	1,990	64,640	56,850	49,350	41,850	34,350	26,850	19,350
1,990	2,000	65,990	57,390	49,890	42,390	34,890	27,390	19,890
2,000	2,020	68,010	58,200	50,700	43,200	35,700	28,200	20,700
2,020	2,040	70,710	59,280	51,780	44,280	36,780	29,280	21,780
2,040	2,060	73,410	60,360	52,860	45,360	37,860	30,360	22,860

2,060	2,080	76,110	61,440	53,940	46,440	38,940	31,440	23,940
2,080	2,100	78,810	62,520	55,020	47,520	40,020	32,520	25,020
2,100	2,120	81,510	63,600	56,100	48,600	41,100	33,600	26,100
2,120	2,140	84,210	65,460	57,180	49,680	42,180	34,680	27,180
2,140	2,160	86,910	68,160	58,260	50,760	43,260	35,760	28,260
2,160	2,180	89,610	70,860	59,340	51,840	44,340	36,840	29,340
2,180	2,200	92,310	73,560	60,420	52,920	45,420	37,920	30,420
2,200	2,220	95,010	76,260	61,500	54,000	46,500	39,000	31,500
2,220	2,240	97,710	78,960	62,580	55,080	47,580	40,080	32,580
2,240	2,260	100,410	81,660	63,660	56,160	48,660	41,160	33,660
2,260	2,280	103,110	84,360	65,610	57,240	49,740	42,240	34,740
2,280	2,300	105,810	87,060	68,310	58,320	50,820	43,320	35,820
2,300	2,320	108,510	89,760	71,010	59,400	51,900	44,400	36,900
2,320	2,340	111,210	92,460	73,710	60,480	52,980	45,480	37,980
2,340	2,360	113,910	95,160	76,410	61,560	54,060	46,560	39,060
2,360	2,380	116,610	97,860	79,110	62,640	55,140	47,640	40,140
2,380	2,400	119,310	100,560	81,810	63,720	56,220	48,720	41,220
2,400	2,420	122,010	103,260	84,510	65,760	57,300	49,800	42,300
2,420	2,440	124,710	105,960	87,210	68,460	58,380	50,880	43,380
2,440	2,460	127,410	108,660	89,910	71,160	59,460	51,960	44,460
2,460	2,480	130,110	111,360	92,610	73,860	60,540	53,040	45,540
2,480	2,500	132,810	114,060	95,310	76,560	61,620	54,120	46,620
2,500	2,520	135,510	116,760	98,010	79,260	62,700	55,200	47,700
2,520	2,540	138,210	119,460	100,710	81,960	63,780	56,280	48,780
2,540	2,560	140,910	122,160	103,410	84,660	65,910	57,360	49,860
2,560	2,580	143,610	124,860	106,110	87,360	68,610	58,440	50,940
2,580	2,600	146,310	127,560	108,810	90,060	71,310	59,520	52,020
2,600	2,620	149,010	130,260	111,510	92,760	74,010	60,600	53,100
2,620	2,640	151,710	132,960	114,210	95,460	76,710	61,680	54,180
2,640	2,660	154,410	135,660	116,910	98,160	79,410	62,760	55,260
2,660	2,680	157,110	138,360	119,610	100,860	82,110	63,840	56,340
2,680	2,700	159,810	141,060	122,310	103,560	84,810	66,060	57,420
2,700	2,720	162,510	143,760	125,010	106,260	87,510	68,760	58,500
2,720	2,740	165,210	146,460	127,710	108,960	90,210	71,460	59,580
2,740	2,760	167,910	149,160	130,410	111,660	92,910	74,160	60,660
2,760	2,780	170,610	151,860	133,110	114,360	95,610	76,860	61,740
2,780	2,800	173,310	154,560	135,810	117,060	98,310	79,560	62,820
2,800	2,820	176,010	157,260	138,510	119,760	101,010	82,260	63,900
2,820	2,840	178,710	159,960	141,210	122,460	103,710	84,960	66,210
2,840	2,860	181,410	162,660	143,910	125,160	106,410	87,660	68,910
2,860	2,880	184,110	165,360	146,610	127,860	109,110	90,360	71,610
2,880	2,900	186,810	168,060	149,310	130,560	111,810	93,060	74,310
2,900	2,920	189,510	170,760	152,010	133,260	114,510	95,760	77,010
2,920	2,940	192,210	173,460	154,710	135,960	117,210	98,460	79,710
2,940	2,960	194,910	176,160	157,410	138,660	119,910	101,160	82,410
2,960	2,980	197,610	178,860	160,110	141,360	122,610	103,860	85,110
2,980	3,000	200,310	181,560	162,810	144,060	125,310	106,560	87,810
3,000	3,020	203,010	184,260	165,510	146,760	128,010	109,260	90,510
3,020	3,040	205,710	186,960	168,210	149,460	130,710	111,960	93,210
3,040	3,060	208,410	189,660	170,910	152,160	133,410	114,660	95,910
3,060	3,080	211,110	192,360	173,610	154,860	136,110	117,360	98,610
3,080	3,100	213,810	195,060	176,310	157,560	138,810	120,060	101,310
3,100	3,120	216,510	197,760	179,010	160,260	141,510	122,760	104,010
3,120	3,140	219,210	200,460	181,710	162,960	144,210	125,460	106,710

3,140	3,160	221,910	203,160	184,410	165,660	146,910	128,160	109,410
3,160	3,180	224,610	205,860	187,110	168,360	149,610	130,860	112,110
3,180	3,200	227,310	208,560	189,810	171,060	152,310	133,560	114,810
3,200	3,220	230,010	211,260	192,510	173,760	155,010	136,260	117,510
3,220	3,240	232,710	213,960	195,210	176,460	157,710	138,960	120,210
3,240	3,260	235,410	216,660	197,910	179,160	160,410	141,660	122,910
3,260	3,280	238,110	219,360	200,610	181,860	163,110	144,360	125,610
3,280	3,300	240,810	222,060	203,310	184,560	165,810	147,060	128,310
3,300	3,320	243,510	224,760	206,010	187,260	168,510	149,760	131,010
3,320	3,340	246,210	227,460	208,710	189,960	171,210	152,460	133,710
3,340	3,360	248,910	230,160	211,410	192,660	173,910	155,160	136,410
3,360	3,380	251,610	232,860	214,110	195,360	176,610	157,860	139,110
3,380	3,400	254,310	235,560	216,810	198,060	179,310	160,560	141,810
3,400	3,420	257,010	238,260	219,510	200,760	182,010	163,260	144,510
3,420	3,440	259,910	241,160	222,410	203,660	184,910	166,160	147,410
3,440	3,460	262,910	244,160	225,410	206,660	187,910	169,160	150,410
3,460	3,480	265,910	247,160	228,410	209,660	190,910	172,160	153,410
3,480	3,500	268,910	250,160	231,410	212,660	193,910	175,160	156,410
3,500	3,520	271,910	253,160	234,410	215,660	196,910	178,160	159,410
3,520	3,540	274,910	256,160	237,410	218,660	199,910	181,160	162,410
3,540	3,560	277,910	259,160	240,410	221,660	202,910	184,160	165,410
3,560	3,580	280,910	262,160	243,410	224,660	205,910	187,160	168,410
3,580	3,600	283,910	265,160	246,410	227,660	208,910	190,160	171,410
3,600	3,620	286,910	268,160	249,410	230,660	211,910	193,160	174,410
3,620	3,640	289,910	271,160	252,410	233,660	214,910	196,160	177,410
3,640	3,660	292,910	274,160	255,410	236,660	217,910	199,160	180,410
3,660	3,680	295,910	277,160	258,410	239,660	220,910	202,160	183,410
3,680	3,700	298,910	280,160	261,410	242,660	223,910	205,160	186,410
3,700	3,720	301,910	283,160	264,410	245,660	226,910	208,160	189,410
3,720	3,740	304,910	286,160	267,410	248,660	229,910	211,160	192,410
3,740	3,760	307,910	289,160	270,410	251,660	232,910	214,160	195,410
3,760	3,780	310,910	292,160	273,410	254,660	235,910	217,160	198,410
3,780	3,800	313,910	295,160	276,410	257,660	238,910	220,160	201,410
3,800	3,820	316,910	298,160	279,410	260,660	241,910	223,160	204,410
3,820	3,840	319,910	301,160	282,410	263,660	244,910	226,160	207,410
3,840	3,860	322,910	304,160	285,410	266,660	247,910	229,160	210,410
3,860	3,880	325,910	307,160	288,410	269,660	250,910	232,160	213,410
3,880	3,900	328,910	310,160	291,410	272,660	253,910	235,160	216,410
3,900	3,920	331,910	313,160	294,410	275,660	256,910	238,160	219,410
3,920	3,940	334,910	316,160	297,410	278,660	259,910	241,160	222,410
3,940	3,960	337,910	319,160	300,410	281,660	262,910	244,160	225,410
3,960	3,980	340,910	322,160	303,410	284,660	265,910	247,160	228,410
3,980	4,000	343,910	325,160	306,410	287,660	268,910	250,160	231,410
4,000이상		345,410	326,660	307,910	289,160	270,410	251,660	232,910

(70세 이상자가 2명인 경우)

(단위 : 원)

월환산액(천원)	공제대상 가족수	2	3	4	5	6	7
		0	0	0	0	0	0
930	935	0	0	0	0	0	0
935	940	0	0	0	0	0	0
940	945	0	0	0	0	0	0
945	950	0	0	0	0	0	0

950	955	0	0	0	0	0	0
955	960	0	0	0	0	0	0
960	965	0	0	0	0	0	0
965	970	0	0	0	0	0	0
970	975	0	0	0	0	0	0
975	980	0	0	0	0	0	0
980	985	0	0	0	0	0	0
985	990	0	0	0	0	0	0
990	995	0	0	0	0	0	0
995	1,000	0	0	0	0	0	0
1,000	1,010	0	0	0	0	0	0
1,010	1,020	0	0	0	0	0	0
1,020	1,030	0	0	0	0	0	0
1,030	1,040	1,340	0	0	0	0	0
1,040	1,050	1,820	0	0	0	0	0
1,050	1,060	2,300	0	0	0	0	0
1,060	1,070	2,780	0	0	0	0	0
1,070	1,080	3,260	0	0	0	0	0
1,080	1,090	3,740	0	0	0	0	0
1,090	1,100	4,220	0	0	0	0	0
1,100	1,110	4,700	0	0	0	0	0
1,110	1,120	5,180	0	0	0	0	0
1,120	1,130	5,660	0	0	0	0	0
1,130	1,140	6,140	0	0	0	0	0
1,140	1,150	6,620	0	0	0	0	0
1,150	1,160	7,100	0	0	0	0	0
1,160	1,170	7,580	0	0	0	0	0
1,170	1,180	8,110	0	0	0	0	0
1,180	1,190	8,650	1,150	0	0	0	0
1,190	1,200	9,190	1,690	0	0	0	0
1,200	1,210	9,730	2,230	0	0	0	0
1,210	1,220	10,270	2,770	0	0	0	0
1,220	1,230	10,810	3,310	0	0	0	0
1,230	1,240	11,350	3,850	0	0	0	0
1,240	1,250	11,890	4,390	0	0	0	0
1,250	1,260	12,430	4,930	0	0	0	0
1,260	1,270	12,970	5,470	0	0	0	0
1,270	1,280	13,510	6,010	0	0	0	0
1,280	1,290	14,050	6,550	0	0	0	0
1,290	1,300	14,590	7,090	0	0	0	0
1,300	1,310	15,130	7,630	0	0	0	0
1,310	1,320	15,670	8,170	0	0	0	0
1,320	1,330	16,210	8,710	1,210	0	0	0
1,330	1,340	16,750	9,250	1,750	0	0	0
1,340	1,350	17,290	9,790	2,290	0	0	0
1,350	1,360	17,830	10,330	2,830	0	0	0
1,360	1,370	18,370	10,870	3,370	0	0	0
1,370	1,380	18,910	11,410	3,910	0	0	0
1,380	1,390	19,450	11,950	4,450	0	0	0
1,390	1,400	19,990	12,490	4,990	0	0	0
1,400	1,410	20,530	13,030	5,530	0	0	0
1,410	1,420	21,070	13,570	6,070	0	0	0
1,420	1,430	21,610	14,110	6,610	0	0	0
1,430	1,440	22,150	14,650	7,150	0	0	0

1,440	1,450	22,690	15,190	7,690	0	0	0
1,450	1,460	23,230	15,730	8,230	0	0	0
1,460	1,470	23,770	16,270	8,770	1,270	0	0
1,470	1,480	24,310	16,810	9,310	1,810	0	0
1,480	1,490	24,850	17,350	9,850	2,350	0	0
1,490	1,500	25,390	17,890	10,390	2,890	0	0
1,500	1,510	25,930	18,430	10,930	3,430	0	0
1,510	1,520	26,470	18,970	11,470	3,970	0	0
1,520	1,530	27,010	19,510	12,010	4,510	0	0
1,530	1,540	27,550	20,050	12,550	5,050	0	0
1,540	1,550	28,090	20,590	13,090	5,590	0	0
1,550	1,560	28,630	21,130	13,630	6,130	0	0
1,560	1,570	29,170	21,670	14,170	6,670	0	0
1,570	1,580	29,710	22,210	14,710	7,210	0	0
1,580	1,590	30,250	22,750	15,250	7,750	0	0
1,590	1,600	30,790	23,290	15,790	8,290	0	0
1,600	1,610	31,330	23,830	16,330	8,830	1,330	0
1,610	1,620	31,870	24,370	16,870	9,370	1,870	0
1,620	1,630	32,410	24,910	17,410	9,910	2,410	0
1,630	1,640	32,950	25,450	17,950	10,450	2,950	0
1,640	1,650	33,490	25,990	18,490	10,990	3,490	0
1,650	1,660	34,030	26,530	19,030	11,530	4,030	0
1,660	1,670	34,570	27,070	19,570	12,070	4,570	0
1,670	1,680	35,110	27,610	20,110	12,610	5,110	0
1,680	1,690	35,650	28,150	20,650	13,150	5,650	0
1,690	1,700	36,190	28,690	21,190	13,690	6,190	0
1,700	1,710	36,730	29,230	21,730	14,230	6,730	0
1,710	1,720	37,270	29,770	22,270	14,770	7,270	0
1,720	1,730	37,810	30,310	22,810	15,310	7,810	0
1,730	1,740	38,350	30,850	23,350	15,850	8,350	0
1,740	1,750	38,890	31,390	23,890	16,390	8,890	1,390
1,750	1,760	39,430	31,930	24,430	16,930	9,430	1,930
1,760	1,770	39,970	32,470	24,970	17,470	9,970	2,470
1,770	1,780	40,510	33,010	25,510	18,010	10,510	3,010
1,780	1,790	41,050	33,550	26,050	18,550	11,050	3,550
1,790	1,800	41,590	34,090	26,590	19,090	11,590	4,090
1,800	1,810	42,130	34,630	27,130	19,630	12,130	4,630
1,810	1,820	42,670	35,170	27,670	20,170	12,670	5,170
1,820	1,830	43,210	35,710	28,210	20,710	13,210	5,710
1,830	1,840	43,750	36,250	28,750	21,250	13,750	6,250
1,840	1,850	44,290	36,790	29,290	21,790	14,290	6,790
1,850	1,860	44,830	37,330	29,830	22,330	14,830	7,330
1,860	1,870	45,370	37,870	30,370	22,870	15,370	7,870
1,870	1,880	45,910	38,410	30,910	23,410	15,910	8,410
1,880	1,890	46,450	38,950	31,450	23,950	16,450	8,950
1,890	1,900	46,990	39,490	31,990	24,490	16,990	9,490
1,900	1,910	47,530	40,030	32,530	25,030	17,530	10,030
1,910	1,920	48,070	40,570	33,070	25,570	18,070	10,570
1,920	1,930	48,610	41,110	33,610	26,110	18,610	11,110
1,930	1,940	49,150	41,650	34,150	26,650	19,150	11,650
1,940	1,950	49,690	42,190	34,690	27,190	19,690	12,190
1,950	1,960	50,230	42,730	35,230	27,730	20,230	12,730
1,960	1,970	50,770	43,270	35,770	28,270	20,770	13,270
1,970	1,980	51,310	43,810	36,310	28,810	21,310	13,810

1,980	1,990	51,850	44,350	36,850	29,350	21,850	14,350
1,990	2,000	52,390	44,890	37,390	29,890	22,390	14,890
2,000	2,020	53,200	45,700	38,200	30,700	23,200	15,700
2,020	2,040	54,280	46,780	39,280	31,780	24,280	16,780
2,040	2,060	55,360	47,860	40,360	32,860	25,360	17,860
2,060	2,080	56,440	48,940	41,440	33,940	26,440	18,940
2,080	2,100	57,520	50,020	42,520	35,020	27,520	20,020
2,100	2,120	58,600	51,100	43,600	36,100	28,600	21,100
2,120	2,140	59,680	52,180	44,680	37,180	29,680	22,180
2,140	2,160	60,760	53,260	45,760	38,260	30,760	23,260
2,160	2,180	61,840	54,340	46,840	39,340	31,840	24,340
2,180	2,200	62,920	55,420	47,920	40,420	32,920	25,420
2,200	2,220	64,000	56,500	49,000	41,500	34,000	26,500
2,220	2,240	66,460	57,580	50,080	42,580	35,080	27,580
2,240	2,260	69,160	58,660	51,160	43,660	36,160	28,660
2,260	2,280	71,860	59,740	52,240	44,740	37,240	29,740
2,280	2,300	74,560	60,820	53,320	45,820	38,320	30,820
2,300	2,320	77,260	61,900	54,400	46,900	39,400	31,900
2,320	2,340	79,960	62,980	55,480	47,980	40,480	32,980
2,340	2,360	82,660	64,060	56,560	49,060	41,560	34,060
2,360	2,380	85,360	66,610	57,640	50,140	42,640	35,140
2,380	2,400	88,060	69,310	58,720	51,220	43,720	36,220
2,400	2,420	90,760	72,010	59,800	52,300	44,800	37,300
2,420	2,440	93,460	74,710	60,880	53,380	45,880	38,380
2,440	2,460	96,160	77,410	61,960	54,460	46,960	39,460
2,460	2,480	98,860	80,110	63,040	55,540	48,040	40,540
2,480	2,500	101,560	82,810	64,120	56,620	49,120	41,620
2,500	2,520	104,260	85,510	66,760	57,700	50,200	42,700
2,520	2,540	106,960	88,210	69,460	58,780	51,280	43,780
2,540	2,560	109,660	90,910	72,160	59,860	52,360	44,860
2,560	2,580	112,360	93,610	74,860	60,940	53,440	45,940
2,580	2,600	115,060	96,310	77,560	62,020	54,520	47,020
2,600	2,620	117,760	99,010	80,260	63,100	55,600	48,100
2,620	2,640	120,460	101,710	82,960	64,210	56,680	49,180
2,640	2,660	123,160	104,410	85,660	66,910	57,760	50,260
2,660	2,680	125,860	107,110	88,360	69,610	58,840	51,340
2,680	2,700	128,560	109,810	91,060	72,310	59,920	52,420
2,700	2,720	131,260	112,510	93,760	75,010	61,000	53,500
2,720	2,740	133,960	115,210	96,460	77,710	62,080	54,580
2,740	2,760	136,660	117,910	99,160	80,410	63,160	55,660
2,760	2,780	139,360	120,610	101,860	83,110	64,360	56,740
2,780	2,800	142,060	123,310	104,560	85,810	67,060	57,820
2,800	2,820	144,760	126,010	107,260	88,510	69,760	58,900
2,820	2,840	147,460	128,710	109,960	91,210	72,460	59,980
2,840	2,860	150,160	131,410	112,660	93,910	75,160	61,060
2,860	2,880	152,860	134,110	115,360	96,610	77,860	62,140
2,880	2,900	155,560	136,810	118,060	99,310	80,560	63,220
2,900	2,920	158,260	139,510	120,760	102,010	83,260	64,510
2,920	2,940	160,960	142,210	123,460	104,710	85,960	67,210
2,940	2,960	163,660	144,910	126,160	107,410	88,660	69,910
2,960	2,980	166,360	147,610	128,860	110,110	91,360	72,610
2,980	3,000	169,060	150,310	131,560	112,810	94,060	75,310
3,000	3,020	171,760	153,010	134,260	115,510	96,760	78,010
3,020	3,040	174,460	155,710	136,960	118,210	99,460	80,710

3,040	3,060	177,160	158,410	139,660	120,910	102,160	83,410
3,060	3,080	179,860	161,110	142,360	123,610	104,860	86,110
3,080	3,100	182,560	163,810	145,060	126,310	107,560	88,810
3,100	3,120	185,260	166,510	147,760	129,010	110,260	91,510
3,120	3,140	187,960	169,210	150,460	131,710	112,960	94,210
3,140	3,160	190,660	171,910	153,160	134,410	115,660	96,910
3,160	3,180	193,360	174,610	155,860	137,110	118,360	99,610
3,180	3,200	196,060	177,310	158,560	139,810	121,060	102,310
3,200	3,220	198,760	180,010	161,260	142,510	123,760	105,010
3,220	3,240	201,460	182,710	163,960	145,210	126,460	107,710
3,240	3,260	204,160	185,410	166,660	147,910	129,160	110,410
3,260	3,280	206,860	188,110	169,360	150,610	131,860	113,110
3,280	3,300	209,560	190,810	172,060	153,310	134,560	115,810
3,300	3,320	212,260	193,510	174,760	156,010	137,260	118,510
3,320	3,340	214,960	196,210	177,460	158,710	139,960	121,210
3,340	3,360	217,660	198,910	180,160	161,410	142,660	123,910
3,360	3,380	220,360	201,610	182,860	164,110	145,360	126,610
3,380	3,400	223,060	204,310	185,560	166,810	148,060	129,310
3,400	3,420	225,760	207,010	188,260	169,510	150,760	132,010
3,420	3,440	228,660	209,910	191,160	172,410	153,660	134,910
3,440	3,460	231,660	212,910	194,160	175,410	156,660	137,910
3,460	3,480	234,660	215,910	197,160	178,410	159,660	140,910
3,480	3,500	237,660	218,910	200,160	181,410	162,660	143,910
3,500	3,520	240,660	221,910	203,160	184,410	165,660	146,910
3,520	3,540	243,660	224,910	206,160	187,410	168,660	149,910
3,540	3,560	246,660	227,910	209,160	190,410	171,660	152,910
3,560	3,580	249,660	230,910	212,160	193,410	174,660	155,910
3,580	3,600	252,660	233,910	215,160	196,410	177,660	158,910
3,600	3,620	255,660	236,910	218,160	199,410	180,660	161,910
3,620	3,640	258,660	239,910	221,160	202,410	183,660	164,910
3,640	3,660	261,660	242,910	224,160	205,410	186,660	167,910
3,660	3,680	264,660	245,910	227,160	208,410	189,660	170,910
3,680	3,700	267,660	248,910	230,160	211,410	192,660	173,910
3,700	3,720	270,660	251,910	233,160	214,410	195,660	176,910
3,720	3,740	273,660	254,910	236,160	217,410	198,660	179,910
3,740	3,760	276,660	257,910	239,160	220,410	201,660	182,910
3,760	3,780	279,660	260,910	242,160	223,410	204,660	185,910
3,780	3,800	282,660	263,910	245,160	226,410	207,660	188,910
3,800	3,820	285,660	266,910	248,160	229,410	210,660	191,910
3,820	3,840	288,660	269,910	251,160	232,410	213,660	194,910
3,840	3,860	291,660	272,910	254,160	235,410	216,660	197,910
3,860	3,880	294,660	275,910	257,160	238,410	219,660	200,910
3,880	3,900	297,660	278,910	260,160	241,410	222,660	203,910
3,900	3,920	300,660	281,910	263,160	244,410	225,660	206,910
3,920	3,940	303,660	284,910	266,160	247,410	228,660	209,910
3,940	3,960	306,660	287,910	269,160	250,410	231,660	212,910
3,960	3,980	309,660	290,910	272,160	253,410	234,660	215,910
3,980	4,000	312,660	293,910	275,160	256,410	237,660	218,910
4,000이상		314,160	295,410	276,660	257,910	239,160	220,410

(70세 이상자가 3명 이상인 경우)

(단위 : 원)

공제대상 가족수	3	4	5	6	7
----------	---	---	---	---	---

월 환산액(천원)						
1,150	1,160	0	0	0	0	0
1,160	1,170	0	0	0	0	0
1,170	1,180	0	0	0	0	0
1,180	1,190	0	0	0	0	0
1,190	1,200	0	0	0	0	0
1,200	1,210	0	0	0	0	0
1,210	1,220	0	0	0	0	0
1,220	1,230	0	0	0	0	0
1,230	1,240	0	0	0	0	0
1,240	1,250	0	0	0	0	0
1,250	1,260	0	0	0	0	0
1,260	1,270	0	0	0	0	0
1,270	1,280	1,010	0	0	0	0
1,280	1,290	1,550	0	0	0	0
1,290	1,300	2,090	0	0	0	0
1,300	1,310	2,630	0	0	0	0
1,310	1,320	3,170	0	0	0	0
1,320	1,330	3,710	0	0	0	0
1,330	1,340	4,250	0	0	0	0
1,340	1,350	4,790	0	0	0	0
1,350	1,360	5,330	0	0	0	0
1,360	1,370	5,870	0	0	0	0
1,370	1,380	6,410	0	0	0	0
1,380	1,390	6,950	0	0	0	0
1,390	1,400	7,490	0	0	0	0
1,400	1,410	8,030	0	0	0	0
1,410	1,420	8,570	1,070	0	0	0
1,420	1,430	9,110	1,610	0	0	0
1,430	1,440	9,650	2,150	0	0	0
1,440	1,450	10,190	2,690	0	0	0
1,450	1,460	10,730	3,230	0	0	0
1,460	1,470	11,270	3,770	0	0	0
1,470	1,480	11,810	4,310	0	0	0
1,480	1,490	12,350	4,850	0	0	0
1,490	1,500	12,890	5,390	0	0	0
1,500	1,510	13,430	5,930	0	0	0
1,510	1,520	13,970	6,470	0	0	0
1,520	1,530	14,510	7,010	0	0	0
1,530	1,540	15,050	7,550	0	0	0
1,540	1,550	15,590	8,090	0	0	0
1,550	1,560	16,130	8,630	1,130	0	0
1,560	1,570	16,670	9,170	1,670	0	0
1,570	1,580	17,210	9,710	2,210	0	0
1,580	1,590	17,750	10,250	2,750	0	0
1,590	1,600	18,290	10,790	3,290	0	0
1,600	1,610	18,830	11,330	3,830	0	0
1,610	1,620	19,370	11,870	4,370	0	0
1,620	1,630	19,910	12,410	4,910	0	0
1,630	1,640	20,450	12,950	5,450	0	0
1,640	1,650	20,990	13,490	5,990	0	0
1,650	1,660	21,530	14,030	6,530	0	0
1,660	1,670	22,070	14,570	7,070	0	0
1,670	1,680	22,610	15,110	7,610	0	0

1,680	1,690	23,150	15,650	8,150	0	0
1,690	1,700	23,690	16,190	8,690	1,190	0
1,700	1,710	24,230	16,730	9,230	1,730	0
1,710	1,720	24,770	17,270	9,770	2,270	0
1,720	1,730	25,310	17,810	10,310	2,810	0
1,730	1,740	25,850	18,350	10,850	3,350	0
1,740	1,750	26,390	18,890	11,390	3,890	0
1,750	1,760	26,930	19,430	11,930	4,430	0
1,760	1,770	27,470	19,970	12,470	4,970	0
1,770	1,780	28,010	20,510	13,010	5,510	0
1,780	1,790	28,550	21,050	13,550	6,050	0
1,790	1,800	29,090	21,590	14,090	6,590	0
1,800	1,810	29,630	22,130	14,630	7,130	0
1,810	1,820	30,170	22,670	15,170	7,670	0
1,820	1,830	30,710	23,210	15,710	8,210	0
1,830	1,840	31,250	23,750	16,250	8,750	1,250
1,840	1,850	31,790	24,290	16,790	9,290	1,790
1,850	1,860	32,330	24,830	17,330	9,830	2,330
1,860	1,870	32,870	25,370	17,870	10,370	2,870
1,870	1,880	33,410	25,910	18,410	10,910	3,410
1,880	1,890	33,950	26,450	18,950	11,450	3,950
1,890	1,900	34,490	26,990	19,490	11,990	4,490
1,900	1,910	35,030	27,530	20,030	12,530	5,030
1,910	1,920	35,570	28,070	20,570	13,070	5,570
1,920	1,930	36,110	28,610	21,110	13,610	6,110
1,930	1,940	36,650	29,150	21,650	14,150	6,650
1,940	1,950	37,190	29,690	22,190	14,690	7,190
1,950	1,960	37,730	30,230	22,730	15,230	7,730
1,960	1,970	38,270	30,770	23,270	15,770	8,270
1,970	1,980	38,810	31,310	23,810	16,310	8,810
1,980	1,990	39,350	31,850	24,350	16,850	9,350
1,990	2,000	39,890	32,390	24,890	17,390	9,890
2,000	2,020	40,700	33,200	25,700	18,200	10,700
2,020	2,040	41,780	34,280	26,780	19,280	11,780
2,040	2,060	42,860	35,360	27,860	20,360	12,860
2,060	2,080	43,940	36,440	28,940	21,440	13,940
2,080	2,100	45,020	37,520	30,020	22,520	15,020
2,100	2,120	46,100	38,600	31,100	23,600	16,100
2,120	2,140	47,180	39,680	32,180	24,680	17,180
2,140	2,160	48,260	40,760	33,260	25,760	18,260
2,160	2,180	49,340	41,840	34,340	26,840	19,340
2,180	2,200	50,420	42,920	35,420	27,920	20,420
2,200	2,220	51,500	44,000	36,500	29,000	21,500
2,220	2,240	52,580	45,080	37,580	30,080	22,580
2,240	2,260	53,660	46,160	38,660	31,160	23,660
2,260	2,280	54,740	47,240	39,740	32,240	24,740
2,280	2,300	55,820	48,320	40,820	33,320	25,820
2,300	2,320	56,900	49,400	41,900	34,400	26,900
2,320	2,340	57,980	50,480	42,980	35,480	27,980
2,340	2,360	59,060	51,560	44,060	36,560	29,060
2,360	2,380	60,140	52,640	45,140	37,640	30,140
2,380	2,400	61,220	53,720	46,220	38,720	31,220
2,400	2,420	62,300	54,800	47,300	39,800	32,300
2,420	2,440	63,380	55,880	48,380	40,880	33,380

2,440	2,460	64,910	56,960	49,460	41,960	34,460
2,460	2,480	67,610	58,040	50,540	43,040	35,540
2,480	2,500	70,310	59,120	51,620	44,120	36,620
2,500	2,520	73,010	60,200	52,700	45,200	37,700
2,520	2,540	75,710	61,280	53,780	46,280	38,780
2,540	2,560	78,410	62,360	54,860	47,360	39,860
2,560	2,580	81,110	63,440	55,940	48,440	40,940
2,580	2,600	83,810	65,060	57,020	49,520	42,020
2,600	2,620	86,510	67,760	58,100	50,600	43,100
2,620	2,640	89,210	70,460	59,180	51,680	44,180
2,640	2,660	91,910	73,160	60,260	52,760	45,260
2,660	2,680	94,610	75,860	61,340	53,840	46,340
2,680	2,700	97,310	78,560	62,420	54,920	47,420
2,700	2,720	100,010	81,260	63,500	56,000	48,500
2,720	2,740	102,710	83,960	65,210	57,080	49,580
2,740	2,760	105,410	86,660	67,910	58,160	50,660
2,760	2,780	108,110	89,360	70,610	59,240	51,740
2,780	2,800	110,810	92,060	73,310	60,320	52,820
2,800	2,820	113,510	94,760	76,010	61,400	53,900
2,820	2,840	116,210	97,460	78,710	62,480	54,980
2,840	2,860	118,910	100,160	81,410	63,560	56,060
2,860	2,880	121,610	102,860	84,110	65,360	57,140
2,880	2,900	124,310	105,560	86,810	68,060	58,220
2,900	2,920	127,010	108,260	89,510	70,760	59,300
2,920	2,940	129,710	110,960	92,210	73,460	60,380
2,940	2,960	132,410	113,660	94,910	76,160	61,460
2,960	2,980	135,110	116,360	97,610	78,860	62,540
2,980	3,000	137,810	119,060	100,310	81,560	63,620
3,000	3,020	140,510	121,760	103,010	84,260	65,510
3,020	3,040	143,210	124,460	105,710	86,960	68,210
3,040	3,060	145,910	127,160	108,410	89,660	70,910
3,060	3,080	148,610	129,860	111,110	92,360	73,610
3,080	3,100	151,310	132,560	113,810	95,060	76,310
3,100	3,120	154,010	135,260	116,510	97,760	79,010
3,120	3,140	156,710	137,960	119,210	100,460	81,710
3,140	3,160	159,410	140,660	121,910	103,160	84,410
3,160	3,180	162,110	143,360	124,610	105,860	87,110
3,180	3,200	164,810	146,060	127,310	108,560	89,810
3,200	3,220	167,510	148,760	130,010	111,260	92,510
3,220	3,240	170,210	151,460	132,710	113,960	95,210
3,240	3,260	172,910	154,160	135,410	116,660	97,910
3,260	3,280	175,610	156,860	138,110	119,360	100,610
3,280	3,300	178,310	159,560	140,810	122,060	103,310
3,300	3,320	181,010	162,260	143,510	124,760	106,010
3,320	3,340	183,710	164,960	146,210	127,460	108,710
3,340	3,360	186,410	167,660	148,910	130,160	111,410
3,360	3,380	189,110	170,360	151,610	132,860	114,110
3,380	3,400	191,810	173,060	154,310	135,560	116,810
3,400	3,420	194,510	175,760	157,010	138,260	119,510
3,420	3,440	197,210	178,460	159,710	141,160	122,210
3,440	3,460	200,410	181,660	162,910	144,160	125,410
3,460	3,480	203,410	184,660	165,910	147,160	128,410
3,480	3,500	206,410	187,660	168,910	150,160	131,410
3,500	3,520	209,410	190,660	171,910	153,160	134,410

3,520	3,540	212,410	193,660	174,910	156,160	137,410
3,540	3,560	215,410	196,660	177,910	159,160	140,410
3,560	3,580	218,410	199,660	180,910	162,160	143,410
3,580	3,600	221,410	202,660	183,910	165,160	146,410
3,600	3,620	224,410	205,660	186,910	168,160	149,410
3,620	3,640	227,410	208,660	189,910	171,160	152,410
3,640	3,660	230,410	211,660	192,910	174,160	155,410
3,660	3,680	233,410	214,660	195,910	177,160	158,410
3,680	3,700	236,410	217,660	198,910	180,160	161,410
3,700	3,720	239,410	220,660	201,910	183,160	164,410
3,720	3,740	242,410	223,660	204,910	186,160	167,410
3,740	3,760	245,410	226,660	207,910	189,160	170,410
3,760	3,780	248,410	229,660	210,910	192,160	173,410
3,780	3,800	251,410	232,660	213,910	195,160	176,410
3,800	3,820	254,410	235,660	216,910	198,160	179,410
3,820	3,840	257,410	238,660	219,910	201,160	182,410
3,840	3,860	260,410	241,660	222,910	204,160	185,410
3,860	3,880	263,410	244,660	225,910	207,160	188,410
3,880	3,900	266,410	247,660	228,910	210,160	191,410
3,900	3,920	269,410	250,660	231,910	213,160	194,410
3,920	3,940	272,410	253,660	234,910	216,160	197,410
3,940	3,960	275,410	256,660	237,910	219,160	200,410
3,960	3,980	278,410	259,660	240,910	222,160	203,410
3,980	4,000	281,410	262,660	243,910	225,160	206,410
4,000 이상		282,910	264,160	245,410	226,660	207,910

소비자상대업종 (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업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나. 부동산 투자 자문업 다.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라. 의류 임대업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라. 주차장 운영업 마. 여행사업 바. 삭제 <2018. 2. 13.>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차. 기타 해상 운송업(낙시어선업으로 한정한다)
8.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삭제 <2014.2.21> 더. 측량사업 러.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머. 사진처리업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카.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으로 한정한다) 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타. 앰블런스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 영화관 운영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다.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라. 박물관 운영업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자. 골프장 운영업 차. 스키장 운영업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타. 수영장 운영업 파. 볼링장 운영업 하. 당구장 운영업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어. 낚시장 운영업 저. 무도장 운영업 쳐.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커. 기원 운영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가.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나. 통신장비 수리업 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 마. 자동차 세차업 바. 모터사이클 수리업 사. 가전제품 수리업 아.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자.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차.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카. 보일러수리 등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타. 이용업 파. 두발 미용업 하. 피부 미용업 거. 손·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너. 욕탕업 더. 마사지업 러.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머. 가정용 세탁업 버. 세탁물 공급업 서.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저. 예식장업 쳐.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커. 산후 조리원 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구 분	업 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측량사업 거. 공인노무사업 너. 행정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바. 숙박공유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

리업으로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무. 자동차 세차업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수. 공구 소매업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주. 중고가구 소매업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투. 가전제품 수리업
 푸.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후.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느. 구두류 제조업
 드. 남자용 겹옷 제조업
 르. 여자용 겹옷 제조업
 므.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브.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으.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즈.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츠. 백화점 크. 대형마트 트. 체인화판의점 프.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호.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기.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니. 육류 소매업 디. 자동차 중개업 리. 주차장 운영업 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비. 통신장비 수리업 시.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6.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다. 기타 통신 판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신��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생략) ④ 법 제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이란 다음 각 호의 <u>요건을 모두</u> 갖춘 신��을 말한다.	제4조의2(신��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생략) ④ ----- ----- ----- <u>어느 하나의 요건을</u> -----.
1. 위탁자가 신��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것	1. ----- ----- ----- -----
2. 신��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2. ----- ----- ----- ----- ----- -----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② (생략)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③ (생략)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생략)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_____

20만원 _____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
한 인출의 요건 등) ① -----

-----.

[illegible]

가. (현행과 같음)

나. -----
 --- 「해외이주법」에 따

다. ~ 바. (생략)

2. (생략)

② ~ ⑤ (생략)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익”이라 한다)

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

큰 해외이주

다. ~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한다.

<신 설>

1.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취득 방법

가.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증권을 취득

나.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증권을 취득(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다.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증권을 취득

2. 취득 대상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신 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 는 장내파생상품 ⑤ ~ ⑩ (생 략)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등) ① 법 제17조제1 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이익”이란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 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 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 다)로부터의 이익과 국외에서	식 또는 수익증권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 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 가목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삭 제> <삭 제> ⑤ ~ ⑩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등) ① 법 제17조제1 항제5호----- ----- ----- ----- ----- ----- ----- ----- ----- -----
---	---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말한다. 다만, 법 제87조 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 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 익은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④ 법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이하 “집합투자기구이익금”이라 한 다) 중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소 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 배받은 금액을 말한다. <신 설>	-----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이라 한다)을 ---. ----- 환 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 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 다)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 다.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다 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신 설>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 A × B - C

A: 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집합
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분배
소득금액(이하 “좌당 분배소득금
액”이라 한다)

B: 결산·분배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
·주수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분배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제150조
의17 제6항에서 제8항까지 및
제150조의18을 준용한다.

1. 제150조의17 제3항제1호에 해
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
2. 제150조의17 제3항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
자증권의 결산 시 기준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하며, 같은

⑤ (생 략)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생
략)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
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
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
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
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50조의17 및 제150
조의18에서 같다)에서 매수시
(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
후로 한다) 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
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집
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
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
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가.·나. (생략)

<신설>

1.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연금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0으로 하며, 축소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이라 한

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1)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중 어느 한 명이 60세 이상일 것

(2)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연금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다만, 축소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로서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연금주택 양도일

2. (생략)

③ ~ ⑥ (생략)

<신설>

현재 연금주택의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
시가가 12억원 이하
일 것

(4) 연금주택 양도일부
터 6개월 이내에 주
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
로 납입할 것

(5) 연금계좌로 납입하
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 금액은 1억원
을 한도로 할 것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주택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
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서류

2. 연금주택 매매계약서 및 축소
주택 매매계약서(축소주택을
매입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
다)

<신설>

<신설>

<신설>

⑧ 국세청장은 주택차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2항
제1호다목(2) 및 (3)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납입연
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
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연금계좌취급
자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
입한 거주자가 제2항제1호다목
(2) 및 (3)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
는 그 납입일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주택차액을 연금보험료
로 보지 아니하며, 연금계좌취급
자는 이를 해당 거주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⑩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한 거주자가 그 납입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주택차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축
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
입일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 설>

금액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로 보지 아니한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

2.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은 금액 = A - (B - C) - D	
A: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잔액
B:	연금주택 양도가액
C:	새로 취득한 주택(여러 번에 걸쳐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각각의 주택)의 취득가액
D:	이미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은 금액의 누적액

⑪ 국세청장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계좌취급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해

<신 설>

<신 설>

당 거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 및 제11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주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즉시 추정하여 추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1. 주택차액 납입 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공제액(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0으로 한다)

2. 운용수익에 대해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 상당액(원천징수한 세액이 없는 경우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을 의미한다)

⑬ 연금주택을 둘 이상의 거주

	자가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지분 비율만큼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고려하여 제40조의 2제2항제1호다목(5) 및 같은 조 제10항을 적용한다. 이때 제40조의 2제2항제1호다목(5)의 한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 min(주택차액, 1억원) × 연금주택 지분비율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절대비 4의2. ~ 5. (생략)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기업업무추진비 4의2. ~ 5. (현행과 같음)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 ----- ----- ----- ----- ----- ----- ----- 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단서 삭제> ----- ----- ----- ----- ----- ----- 1. (현행과 같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	---

<신 설>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② (생 략) ③ 삭 제 ④ 법 제34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 0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나.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④ -----		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생 략)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생 략) ④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 ----- <u>특례기부금과</u> ----- ----- <u>일반기부금을</u> <u>구분하여</u>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제58조, 제76조</u>----- ----- -----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	--	--	--	--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좌 동)
2. 삭 제	2의2. -----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30/100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 30/100
3.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	3. -----
	일반기부금-----
	-----.

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같은 호에 따른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 -----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3조(접대비)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③ ----- ----- ----- -----.
1.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	1. 기업업무추진비가----- ----- ----- ----- -----

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 -----.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u>접대비한도액</u> 계산)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u>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u>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 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 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u>접대비로서</u>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 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 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 서 “ <u>접대비한도액</u>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①----- ----- ----- ----- ----- ----- -----“기 업업무추진비한도액”이라-----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을 적용할 때 2개 이상 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u>접대비가 접대비한도액</u> <u>에</u>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④----- ----- <u>기업업무추진비가 기업업 무추진비한도액에</u> ----- -----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 ⑨ (생 략)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소득 세액 중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제1호의 금액에 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후 단 신설>	⑩ ----- ----- ----- ----- ----- 법 제57조제2항 본문----- 이 경우 법 제57조제2항 본문을 적용받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국외원 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 소득세액은 공제받지 못한 과세 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 입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1. 2. (현행과 같음)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 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 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5 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간접투자 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 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 다)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Sigma (A \times B)$$

A: 간접투자회사등의 일별 좌당(또는 주당)
외국납부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의 총
좌수 또는 총 주식 수로 나눈 금액)
B: 해당 시점의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또는 주식수)

② 제1항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하며,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Sigma \{ (A \times B) \times C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일별 좌당(또는 주당) 외국납부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총 좌수 또는 총 주식 수로 나눈 금액)
B: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해당 시점의 간접투자회사등의 보유 좌수(또는 주식수)
C: 해당 시점의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또는 주식수)를 해당 시점의 간접투자회사 총 좌수(또는 주식 수)로 나눈 값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50조의17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보다 작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에 따	법 제55조제1항에
른 원천징수세율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이 산출된	에 대한
외국 원천징수세율	한계세율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1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⑤ 제4항제1호 산식 중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세율을 말한다(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같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접 외국 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사업연도등”이라 한다) 외국납부세액을 직전 사업연도등의 국외원

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의 당해 소득으로 나눈 값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값에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등의 평균 투자비율을 곱한 값(간접투자회사등이 복수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값)

3. 하나의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법인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각 호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값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

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 ----- ----- ----- -----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④ (현행과 동일)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 (현행과 동일)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u>사업자</u>	2. ----- ----- ----- ----- ----- ----- <u>사업자.</u> <u>다만, 다목의 수리 및 기타 개</u>

	<u>인 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3천6백만원으로 한다.</u>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동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6(국외금융투자자산으로부터의 금융투자소득 등)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정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장에서 “국외금융투자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다만, 해당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은 제외한	제150조의6(국외금융투자소득) ①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및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이하 “국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외국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한한다.

다.	
<신 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7(적격집합투자기구 등)	제150조의7(집합투자증권 등) ①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적격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않는다.	<삭 제>
1.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	
	② 제1항에 따른 국외금융투자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은 제외한다.

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이익금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이익금이 0보다 작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2.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3. 집합투자기구이익금과 제1호의 분배금 및 유보금 내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③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삭 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집합투자기구이익금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의 평가이익 등 적격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소득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8(금융투자소득의 수입 시기) ① 금융투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2. (생략) 3.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제150조의7제3항에 따른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삭제>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8(금융투자소득의 수입 시기) ①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4. 5. (생략) ② (생략)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2(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 ① 거주자의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2(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① ----- 국외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때 국외에 있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 ----- ----- ----- ----- ----- ----- ----- ----- ----- ② ----- 양도가액 ----- ----- ----- ---
--	---	--	--	--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

1.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
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준가

1. -----

----- 기준가격

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
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
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
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
전 결산·분배 직후(결산·분
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로 한다)의 기준가격을 뺀
금액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
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
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
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생략)

<신설>

가.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나. (현행과 같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
시장(이하 이 절에서 “해외

2. (생략)

④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
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양도소득금액은 제
3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도가
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
액으로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적격집합
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분배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집합
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기
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 중 금융
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
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
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
장된 집합투자증권

2. (현행과 같음)

④ -----
----- 매도하거
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
투자증권을 해외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
-----.

<삭제>

하거나 <u>뺀</u> 금액. 이 경우 <u>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u> <u>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u> <u>분배하는 금액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u> <u>한도로</u> 한다.		한 법률」 제249조의8제8항에 따라 <u>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u> <u>규약으로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u> <u>등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경</u> <u>우에는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u> <u>손익을 기준으로 좌당양도소득</u> <u>금액 및 좌당분배소득금액을</u> <u>각</u> <u>각 산정한다.</u>	----- ----- ----- ----- ----- <u>좌당양도소득금액</u> ----- -----
⑥ <u>제1항 및 제2항을</u> <u>적용할 때</u> <u>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u> <u>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u> <u>매수 시의 기준가격은 제92조제</u> <u>2항제2호에 따른 선입선출법을</u> <u>준용하여 산정한다.</u>	⑥ <u>제1항</u>----- ----- ----- ----- -----.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8(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 특례) ① 제150조의17에 따라 <u>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u> <u>금액,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u> <u>득금액을</u> <u>계산할 때 2024년 12</u> <u>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집합투</u> <u>자증권의 기준가격, 실제 매수</u> <u>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u> <u>른다. <단서 신설></u>	-.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8(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 특례) ① ----- <u>양도소득</u> <u>금액</u>----- ----- ----- ----- -----.
⑦ <u>같은 계좌 내에서 증권시장에</u> <u>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u> <u>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u> <u>매수 시의 기준가격은 제6항에</u> <u>도 불구하고 제92조제2항제5호</u> <u>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u> <u>산정한다.</u>	⑦ ----- ----- <u>같은 집합투자증권 또는</u> <u>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같은</u> <u>집합투자증권을</u> ----- ----- -----.	1. 제150조의17제3항제1호에 따라 <u>좌당양도소득금액을</u> <u>계산</u> <u>할 때 직전 결산·분배 직후</u> <u>(결산·분배가 없었던 경우에</u>	다만, 제150조의17제3항제1호다 목에 따른 해외증권시장에 상 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제150조의17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7(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① ~ ⑦ (생략) ⑧ <u>제1항 및 제2항을</u> <u>적용할 때</u>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u>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7(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제1항</u>----- -----	1. 제150조의17제3항제1호 가 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D: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다만, 제150조의26제2항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또는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의 기준가격 중 큰 가격으로 한다)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 A - (B - C ± D)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 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 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 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 증권 ② ~ ④ (생략)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87조의17제1항제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 다. 1. (생략)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 식등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가. 나. (생략)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주식등: 가목1)·2)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가	② ~ ④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 ----- -----	목2)의 산식에 따라 평가 한 가액으로 할 것 1)·2) (생략) 3)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 속하여 결손금(「법인세 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 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 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신설> <신설> <신설>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4)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 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 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 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존 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의 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존 속기한이 3년 이내 인 법인의 주식등
--	---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6(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신설>	제150조의26(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①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격집합투자기구로 본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이익금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이익금이 0보다 작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2.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3. 집합투자기구이익금과 제1호의 분배금 및 유보금 내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 ----- ----- -----.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집합투자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하 “투자비

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일 것	을”이라 한다)이 매일 집합투 자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 록 투자(이하 “최저투자의무” 라 한다)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투자비율 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에도 3 분의 2 이상인 것으로 본다. 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 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1개 월 나.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종료일 이전 1개월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일 또 는 해지일(최초 설립일 또 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 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다) 이전 1개월 라.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 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 이 각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여 최저투자의무를 위반
-------------------------------	---

<신 설>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② (생 략)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 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 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 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 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	하게 된 날부터 1개월 마.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 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투 자의무를 위반하게 된 날부 터 1개월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 산”이라 한다)의 평가이익 등 적 격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소득 계산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 담하는 ----- ----- ----- ----- ----- ----- -----
---	---

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
 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
 은 제외한다.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 (생략)

② 삭 제

③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지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3. (생략)

④ ~ ⑥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 (현행
과 같음)

③

1. -----(특별자
치시와 -----

2.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

2. 조건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
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
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
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
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
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
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건의 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④ ~ ⑧ (생략)

⑨ 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말한다. 이하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특별자치시와)---

⑩ ~ ⑪ (현행과 같음)

②0 주택[

한정한다)

한다]

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 3. (생략)

②① ~ ②⑤ (생략)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

1. ~ 3. (현행과 같음)

㉑ ~ ㉕ (현행과 같음)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 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신 설>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1. -----

-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

-----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
임대를 개시할 -----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
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직전임대차계약-----

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1. (생략)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나. (생략)

다. 제4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 ③ (생략)

④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

-----.

1.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 (현행과 같음)

2. -----

----- 현금·대여금 및

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⑤ ~ ⑧ (생략)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text{취득가액} = A \times \frac{B}{C}$$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채무액

C: 증여가액

2. (생략)

② (생략)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

1. -----

$$\text{취득가액} = A \times \frac{B}{C}$$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경우로서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채무액

C: 증여가액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고, 가업

공동상속주택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나. (생략)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제1호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나. (생략)

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상

-.

가. -----

----- 금융회사등 -----
-----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가.·나. (현행과 같음)

<삭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신설>

<신설>

<신설>

4. (생략)

⑤ ~ ⑫ (생략)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⑤ (생략)
⑥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라.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마.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바.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4. (현행과 같음)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생략)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

⑦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1. (현행과 같음)

2. _____

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을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 다. (생략)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illegible]

가. ~ 다. (현행과 같음)

[illegible]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 7) (생략)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 임대한 -----

3) ~ 7) (현행과 같음)

마. _____

_____ 임대한 _____

④1세대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또는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를 적용한다.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 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④

일

반주택

⑤

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
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일반주택 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2.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로 해당 의무
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
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

-----.

-----.

1. -----

----- 임대

주택등을 -----

2. -----

가. -----

----- 의무임대

기간등 -----

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 등을 계속 임대·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나. ~ 마. (생략) ⑥ ~ ⑨ (생략) 제167조의4(1세대 3주택·임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삭제 ② (생략) ③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임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 5. (생략) 6.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 ----- ----- -----. 나. ~ 마.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4(1세대 3주택·임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6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7. (생략) ④·⑤ (생략)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 6의2. ----- ----- ----- ----- ----- ----- ----- ----- ----- 2024년 5월 9일----- ----- 7.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
--	---	--	---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 4. (생략)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

주택의 범위) ①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생략)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9. ~ 11. (생략)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

7. (현행과 같음)

<삭제>

9. ~ 11. (현행과 같음)

<삭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		
1. 제1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56조의3제2항·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삭 제>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6.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삭 제>		
7.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	<삭 제>		
		분양권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삭 제>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	12. ----- -----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비과세 신청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인(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인으로 본다) 이상인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법 제119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제179조의6(거주자의 국채등에 대한 소득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라,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른 국외투자구에 포함된 거주자는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기업업무추진비 등은----- -----.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 ~ 10. (생략)	5. ~ 10. (현행과 같음)
①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4조의5(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생략)	제184조의5(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이란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 ----- ----- ----- ----- -----.
		1. 금융회사등이 제203조의2제12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1. ----- 제203조의2제15항-----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
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
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
세율보다 작은 경우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
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
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
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200 –

– 201 –

<신 설>

⑨ 제6항부터 제8항에 따라 기본공제 신청을 한 경우 신청 이후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적용된 기본공제 금액 및 기본공제가 적용된 금융회사등을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본공제 신청금액이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등에 추가적으로 기본

⑧ 국세청장은 제6항 전단에 따라 거주자가 금융회사등에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 자료집중기관에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신청금액에 관한 자료를 조회·열람할 수 있게 요청하거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이 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⑪ ----- 제6항부터 제8항-----

있다.

⑨ 금융회사등은 거주자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한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제6항 전단에 따른 신청 금액의 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 요청하여 거주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에 신청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⑩·⑪ (생략)

<신설>

⑫ -----

----- 제6항부터 제8항에 따른 신청금액-----

⑬·⑭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⑮ 금융회사등은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법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아니한 양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를 원인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에게 해당 소득(한 계좌 내 동일종목의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종목의 금융투

⑫ 금융회사등은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에게 해당 소득(한 계좌 내 동일종목의 주식등 중 일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를 말한다)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⑬ 금융회사등은 제12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었으나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전까지 계좌보유자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요청서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⑭ 금융회사등은 제12항에 따라

자소득 전부를 말한다)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삭제>

⑯ ----- 제15항-----

----- 금융투자소득 계산에 필요한 서류-----

⑰ ----- 제15항-----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 하지 않은 소득에 관한 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 ----- ----- ----- -----.
<신 설>	⑳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 융투자상품을 다른 금융회사등 의 계좌로 대체 또는 이체하는 금융회사등은 취득가액 등 금융 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거 래내역을 금융투자상품의 대체 또는 이체시에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금 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해당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⑭ (생 략)	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⑭ (현행과 같 음)
⑮ (생 략) ⑯ 제15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금융회사등이 관리하고 있는 계	⑮ (현행 제15항과 같음) ⑰ 제18항----- -----

좌를 통해 거주자인 주주가 소 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2025년 1월 1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 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주식등 의 취득가액은 법 제87조의12제 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 ----- ----- ----- ----- ----- -----
1. 2. (생 략)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4(원천징수배제 신청) ① (생 략) <신 설>	----- ----- ----- ----- ----- ----- ----- ----- ----- ----- -----
② 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받 은 금융기관등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원천 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명세서와 제1항에 따 라 제출받은 원천징수배제신청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4(원천징수배제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 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 ----- ----- ----- ----- ----- ----- -----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관

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인 원천징수배제신청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 --.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2. ----- ----- - 제36조제1항제2호----- ----- -----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③ -----제36조제1항제2호----- ----- ----- ----- -----

발급하여야 한다.	-----
④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 ----- ---- 용역(다만 「법인세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와 거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생 략)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 ----- ----- -----8천만원-----사업자(최초로 요건을 충족한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③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	③ -----

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

2.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결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 등”이라 한다)으로 1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
기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

-----의무가 최초로 발생하는 때

2. -----

-----최초로 8천만원 이상이 되는-----
-----7월 1일.-----

-----8천만원----- 경우에는 -----

-----과세기간의 개시일.

④ ~ ⑦ (생략)
<신 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63조의3제1항의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3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⑦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⑧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

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 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

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2.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 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 는다.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 제 등) 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 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 인 경우	<삭 제>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 목, 리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2. ----- ----- ---버목-----
2의3. ~ 3. (생 략)	2의3. ~ 3.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 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① ----- ----- ----- -----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 ----- ----- ----- -----.
1.~9. (생 략)	1.~9.(현행과 같음)
10.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 료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0.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국 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 료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신 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차액결제거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2025년 1월 1일 전 체결된 제150조의21제1항제5호 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기 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중 2 025년 1월 1일 전까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의 수입시기는 제150 조의8제5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 98조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 을 최초 수입시기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1